

목 차

국회법의 이해

김승묵(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이해

김정아(국회사무처 서기관)

국회 회의록 특이사례 연구

이미정(전 대한속기협회 사업이사)

일본 중의원 기록부 연구보고서

이서진(대한속기협회 홍보부 기자)

2021년도 한글속기학술연구 자료집

국회법의 이해

김승묵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회법의 이해

김 승 목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목 차

■ 국회법 들어가기 : 구성, 용어, 원구성 등	1
1. 국회법 한눈에 보기 : 국회법의 구성	1
2. 국회법 이해하기 : 의회 용어의 이해	3
3. 원구성 이해하기 : 의장단, 상임위 구성 등	13
4. 교섭단체의 이해	16
5. 국회법의 유권해석	17
■ 의안처리 과정 및 주요쟁점사항	20
※ 의안처리절차도	20
※ 법률안 처리절차도	21
※ 예산안·결산 처리절차도	22
1. 의안 숙려제 및 자동상정	23
2. 안건신속처리제	27
3. 위원회 안건조정	32
4.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37
5. 본회의 무제한 토론	41
6.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46
7.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관련	49
8. 위원회별 상이한 운영사례를 통한 국회법의 실제적용	53
9. 본회의 안건심의 개관 및 사례연습	64

I 국회법 들어가기 : 구성, 용어, 원구성 등

1 국회법 한눈에 보기 : 국회법의 구성

● 총 16장 169조(가지조문 42개조), 부칙으로 구성¹⁾

제1장 총 칙 (§1~§6)

- 「국회법」의 목적과 의원의 등록 및 의석 배정, 정기회 및 임시회의 집회,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개회식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7~§8)

- 국회의 회기와 휴회, 휴회 중 회의 재개요구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9~§23)

- 의장·부의장의 선거·임기·직무대행·사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예산

제4장 의 원 (§24~§32)

- 의원선서, 품위유지의무, 체포동의 및 석방 요구, 검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수당·여비, 청가·결석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33~§71)

- 교섭단체, 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회 회의, 정족수, 소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의안의 자동 상정, 위원회의 심사, 공청회, 청문회, 전원위원회

제6장 회 의 (§72~§114의2)

-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72~§78)
- 제2절 발의·위원회 회부·철회와 번안 (§79~§92)
- 제3절 의사와 수정 (§93~§98의2)
- 제4절 발 언 (§99~§108)
- 제5절 표 결 (§109~§114의2)

제7장 회의록 (§115~§118)

- 회의록의 기재사항, 자구정정, 배부

1)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2. 5. 30.]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119~§122의3)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대정부질문, 긴급현안질문

제9장 청원 (§123~§126)

- 청원의 제출 및 심사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127~§129)

-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제11장 탄핵소추 (§130~§134)

- 탄핵소추의 발의·조사·의결·효과

제12장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135~§142)

- 의원의 사직·퇴직, 의원자격심사의 청구·심사·의결

제13장 질서와 경호 (§143~§154)

- 의장의 경호권, 질서 유지, 국회방송, 회의장 출입 및 방청제한

제14장 징계 (§155~§164)

- 징계의 사유·요구·변명·의결, 징계의 종류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165~§167)

-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의무, 회의 방해죄

제16장 보칙 (§168~§169)

- 기간의 기산일, 국회규칙의 제정권

● **준용규정의 구성**

제57조(소위원회)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2 국회법 이해하기 : 의회 용어의 이해

가 정기회와 임시회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외위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정기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집회되는 회기이며, 임시회는 국회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수시로 집회하는 회기임.
- 임시회는 대통령, 국회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의 요구(제3조제3항)에 의하여 집회됨.

■ 생각해보기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 그러면 집회요구 없이 법률에 의하여 매년 집회하는 정기회는 공고를 해야 하는가?

■ 생각해보기

-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다만, 제6대국회부터 정기회의 집회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하고 있음.
-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특정일에 집회공고를 한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있을까?
 - 제19대 국회 제340회 국회(임시회)의 경우 2016년 2월 5일 2월 11일을 기일로 하는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집회일 6일 전에 공고하였으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2월 9일 기존의 집회요구가 철회되고, 2월 10일을 기일로 하는 집회요구서가 다시 제출되어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한 사례 있음.
-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특정일 오후 2시 집회공고를 한 이후 제1차 회의를 오후 2시가 아니라 10시로 변경하여 개의할 수 있을까 사례는? 이전 임시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하여 이번 임시회 첫째날 12시 01분에 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까?

4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과 실제 국회 운영의 차이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 1년간의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일정
- 국회의 상시운영을 지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의사일정 작성 시에 이를 존중할 필요. 다만,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매 회기마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 또는 당일 의사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생각해보기

- 상시국회 구현을 위해 국회법 제5조의2 개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매 입법기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의 발의되고 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국회법 개정(2020.12.22. 시행)을 통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변경됨. 이러한 논의의 한계는? 극복 방안은 ?
 - 임시회는 헌법에 따른 소집요구 필요.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라 자동집회 될 수는 없음.
- 임시회 소집요구는 꼭 필요한 것인가? 헌법의 의미는?

㉔ 회기결정, 회기 전체 의사일정, 당일 의사일정

-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

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국회의 회기**란 국회가 의사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집회일부터 그 폐회일까지의 활동기간을 의미.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회기 전체 의사일정** :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을 대강을 기재
- **당일 의사일정** :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관례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생각해보기

- 회기는 국회법에 따라 집회 후 즉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회기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는?
→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30일.
- 회기연장의 횟수는 법정일수 내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가?
→ 30일은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일수 내에서는 몇 회라도 연장할 수 있음.
- 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을 거부하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대응방안 및 한계?, 이에 따른 법 개정 방향은?
→ 기본적인 사항은 회의운영하기 장을 참조,

■ 생각해보기

- 당일 의사일정 작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가 협의해 주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은 작성할 수 없는 것인가?
→ 합의와 협의의 의미 다음 장 확인
- 위원회 회의 중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시 유의할 사항은?
→ 국회법 제71조의 이해, 의사일정 변경동의 시 이유서 첨부 규정의 이해
- 동일한 명칭의 안건에 관한 의사일정 작성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경우 동일한 안건을 하나의 항으로 기재하고 괄호안에 숫자를 써서 표시함.
그러면 동일한 제명의 법률 개정안을 동일한 차수의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사례는? 다른 상임위에서 유사한 결의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때 의사진행 관련 사례는 ?

라 합의와 협의의 구분

- 국회법은 합의와 협의를 구분하고 있음. 합의는 국회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협상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협의와는 구분됨.

■ 현재결정례

-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 “직권상정하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팩시밀리로 의사일정안을 송부한 이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010 헌라5, 2012.2.23.)

마 의안과 안건의 이해

- 의안 : 헌법과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의미함.
- 안건 :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으로서 의안과 기타 사안을 말한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이하 생략)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생각해보기

- 법 개정 또는 검토 시 정확한 용어 사용의 중요성 : 의안과 안건의 용례에 따라 의사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 의안과 안건의 이해 : 회기결정의 건은 의안일까 안건일까? 관리를 위한 의안번호가 필요한가?

바 동의(勳議)와 동의(同意)의 이해

- 동의(勳議) :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됨(예 : 변경동의, 수정동의, 중요동의)

※ 참고 : 국회법 해설(p431)

본래 동의는 회의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현상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을 갖추지 아니한 회의석상에서의 의사표시인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부적당하게 되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안을 갖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의안을 의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그 결과 동의대상은 회의진행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다만, 간단한 내용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동의를 활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동의(同意) : 의사나 의견을 같이함. 통상 국회(위원회)가 정부등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 (예 : 체포동의, 임명동의 등)

■ 생각해보기

- 법률안 등 의안은 발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침. 그러면 본회의에서 동의로 의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을까?
→ 결의안 채택의 건에 관한 사례 및 한계

사 1일 1차 회의의 원칙과 차수변경의 이해

- 1일 1차 회의의 원칙 :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국§73②), 당일의 의사가 끝나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그 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국§74). 이와 같이 1일에 한차례 회의만을 열 수 있는 의회운영의 원칙을 의미함. 다만, 산회 후 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서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산회와 유회

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의미하며, 유회는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이후 속개를 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제74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각해보기

- 차수변경의 정확한 이해 : 본회의에서 당일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11시 잠시 정회하였으나, 12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회의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1시경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차수변경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차수변경의 정확한 의미 및 이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

■ 생각해보기

- 차수변경의 정확한 이해 : 1일1차 회의 원칙의 예외로서 무제한토론이 있음. 그러면 국정감사 중에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야할까?
→ 국정감사는 국회법상 회의가 아님. 따라서 차수변경 논의 대상 아님. 다만, 증인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뿐임.

아 투표불성립과 일사부재의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은 의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투표결과가 집계되어 전자투표 게시판에 투표결과가 표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료됨.
 - ※ [2009헌라8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의견 중] “이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 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
 - ※ 투표불성립 개념에 대한 오해 : 투표불성립은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회의 관례는 의결정족수 부족일 경우 투표불성립으로 봄. 즉 투표불성립은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님.

■ 생각해보기

- 미디어법 처리 당시 헌재(2009헌라8, 2009. 10. 29., 전원재판부)는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 재판관 4인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부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 생각해보기

재판관 5인은 부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투표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투표불성립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부결로 보아야 하는가?

→ 부결로 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 및 문제점,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투표불성립으로 보는 이유는?

자 기타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이해

※ 실무상 적용되는 정족수- 제1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부의 및 상정의 의미

가 원구성의 의의 및 관계 규정

- 국회의 원(院)구성이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함

제5조(임시회)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나 의장 및 부의장 선거 (국회법 §15 ②)

- 법정선거일 : 전반기 임기 개시 후 7일, 후반기 임기만료일 5일 전
- 무기명투표로 실시 :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결선투표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다수득표자 당선)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 선거 시 : 최다선의원이 사퇴(국회법 §18 D)

다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국회법 §48)

-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위원선임 요청공문 접수(전반기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2일 이내, 하반기 : 임기만료일 3일 전) 및 선임
- 비교섭단체 의원의 희망 상임위원회 수요조사 및 배정(의장)
※ 위원 정수 변경 시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안 개정 필요

라 위원장 선거 (국회법 §41 ③)

- 총 18명 선거 : 상임위원장(17개위) 및 상설특별위원장(예결위)
- 전반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 실시, 하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 무기명투표로 실시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다수득표자 당선

■ 생각해보기

- 의장단 선거는 수기식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왔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전자 무기명투표와 수기식 무기명투표의 실무와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요청하지 않을 경우 규정과 사례는, 정보위원회는?
-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투표방법 변경요구가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인사에 관한 안건(예를 들어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 관례에 따라 이익유무로 표결 중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어떤 표결방식으로 표결해야 할까? 위원회와 본회의의 사례는?

마 원구성 (21대 전반기) 흐름도

절 차	국회법·국회관례
<p>의장·부의장 선거 (20대 : 6. 9.)</p>	<p>◦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실시(국§15②)</p>
<p>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20대 : 6. 9. / 6. 13.)</p>	<p>◦ 위원정수규칙개정 : 의장제와 본회의 의결 특위 구성의 건</p> <hr/> <p>◦ 위원정수 규칙 개정 : 특별위원장 제안+ 본회의 의결</p>
<p>상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수 배분</p>	<p>◦ 교섭단체 소속 <u>의원 수의 비율</u>(국§48①)과 <u>교섭단체간 협의</u>에 따라 배분 ※ 협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는 비율과 달리 위원수 배분</p>
<p>상임(상설특별)위원장 배분</p>	<p>◦ 국회법 규정은 없음 ◦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u>의원 수 비율</u> 등을 기준으로 <u>교섭단체간 협의</u> 배분 ※ <u>비교섭단체에 위원장 배분 사례</u> 제16대국회 전, 후반기: 자민련-농해수위, 울리특위 제18대국회 후반기: 선진당-복지위</p>
<p>상임(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대 : 6. 13.)</p>	<p>◦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u>2일 이내</u>에 의장에게 선임 요청(국§48①) - 교섭단체 소속 의원 : 원내대표 요청 공문에 따라 의장이 선임 -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 희망상임위 수요조사 후, 의장이 선임</p>
<p>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 (20대 : 6. 13.)</p>	<p>◦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u>3일 이내</u> 실시(국§41③) ◦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국§41②)</p>

가 교섭단체의 의의 및 구성

- 교섭단체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국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의미함.
-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 2개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각 정당단위로 하여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제33조제1항 단서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 ①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경우, ② 소속 의원 20명 미만인 정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③ 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생각해보기

- 특정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수 있을까?
-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다른 교섭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까?
- 특정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위원의 개선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당대표는 위원의 개선을 반대하고, 원내대표는 위원의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 국회 관련법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 참고 : 1964년10월31일 제45회국회 정기회 제31차본회의에서 국회가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범위의 한계 및 그 효력에 관하여 “국회는 국회에 직접 관련 있는 국회법·국회규칙·국정감사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 등의 각 조문에 한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민법·형법 등 직접 국회에 관련이 없는 법률 등에 대하여는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결의한 바 있음.
- 국회관련법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경우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국회관계법을 소관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를 의뢰한 후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확정하여 왔음.

가.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

의뢰자	안 건 명	본회의 의결
국회의장	국무위원의 국적 및 공민권유무에 관한 법적 해석에 관한 건	심사 보고 및 의결 (1951. 5.14)
"	국회법 중 '적당한 위원회'의 개념해석에 관한 動議	심사 보고 및 의결 (1958.11.18)
"	의장 사임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動議	심사 보고 및 의결 (1960. 6.16)

나. 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례

- 2003년4월4일 국회의장이 의뢰한 동의안의 수정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다.
- ※ 동 사안에 대하여 2003년 4월 4일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도 의뢰하였으나,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 o 2008년 10월22일 민주당 최영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의 거부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2008년 10월29일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동 사안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동 사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신하였다.

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예

2006년9월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라.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예

1964년5월7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법」 제70조·제93조 및 제97조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

마. 국회사무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예

1966년10월16일 국회사무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을 통보받아 처리하였다.

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방위원장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이를 처리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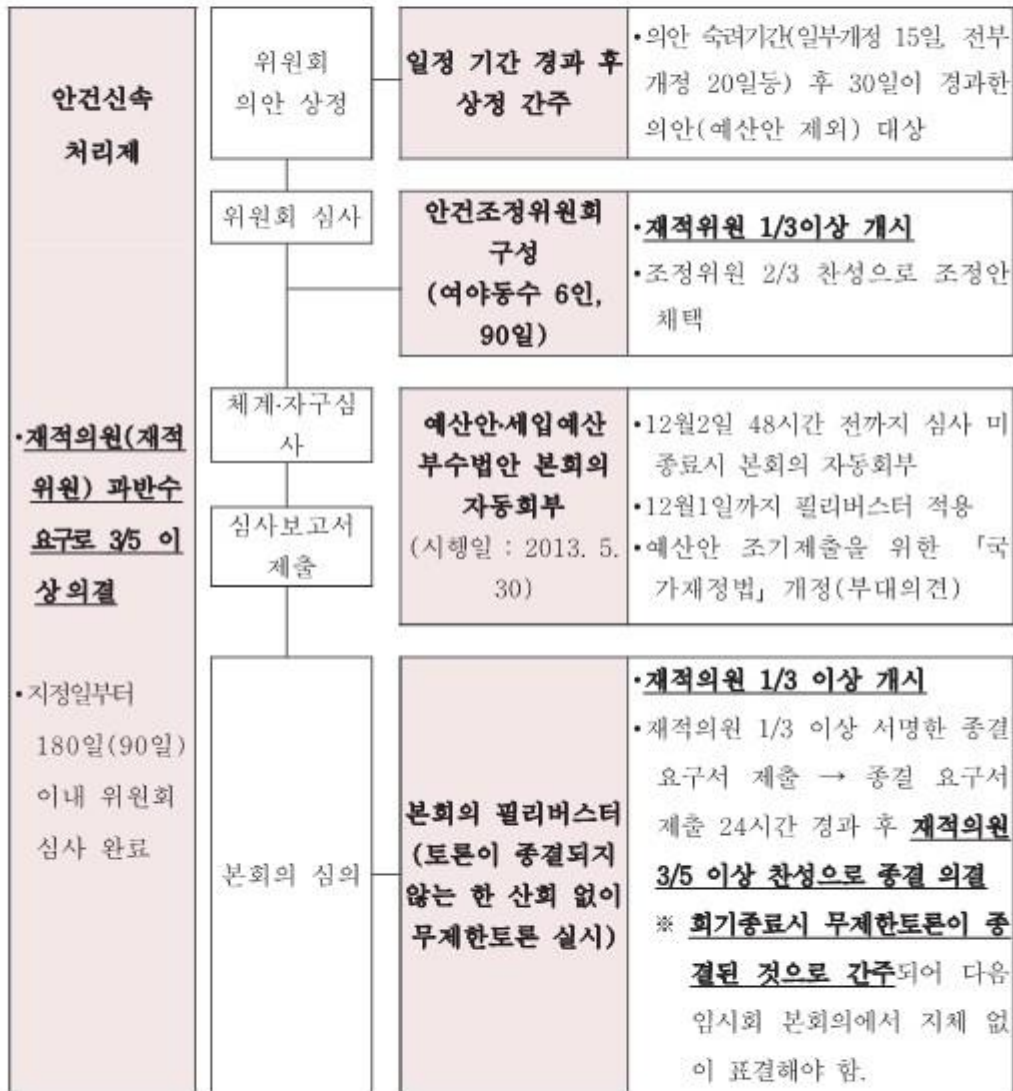
2001년4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이를 처리하였다.

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예

일 자	의뢰자	의뢰내용	비 고
2001.9.14	정무위원장	국정감사시 자료제출 및 문서검증과 관련하여 국정감사및조시에관한법률 제10조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간의 상충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	법제처는 행정부처 외의 다른 국가기관 의 요청에 의하여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동 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벗어난다는 사유로 정무위원회의 질의서를 반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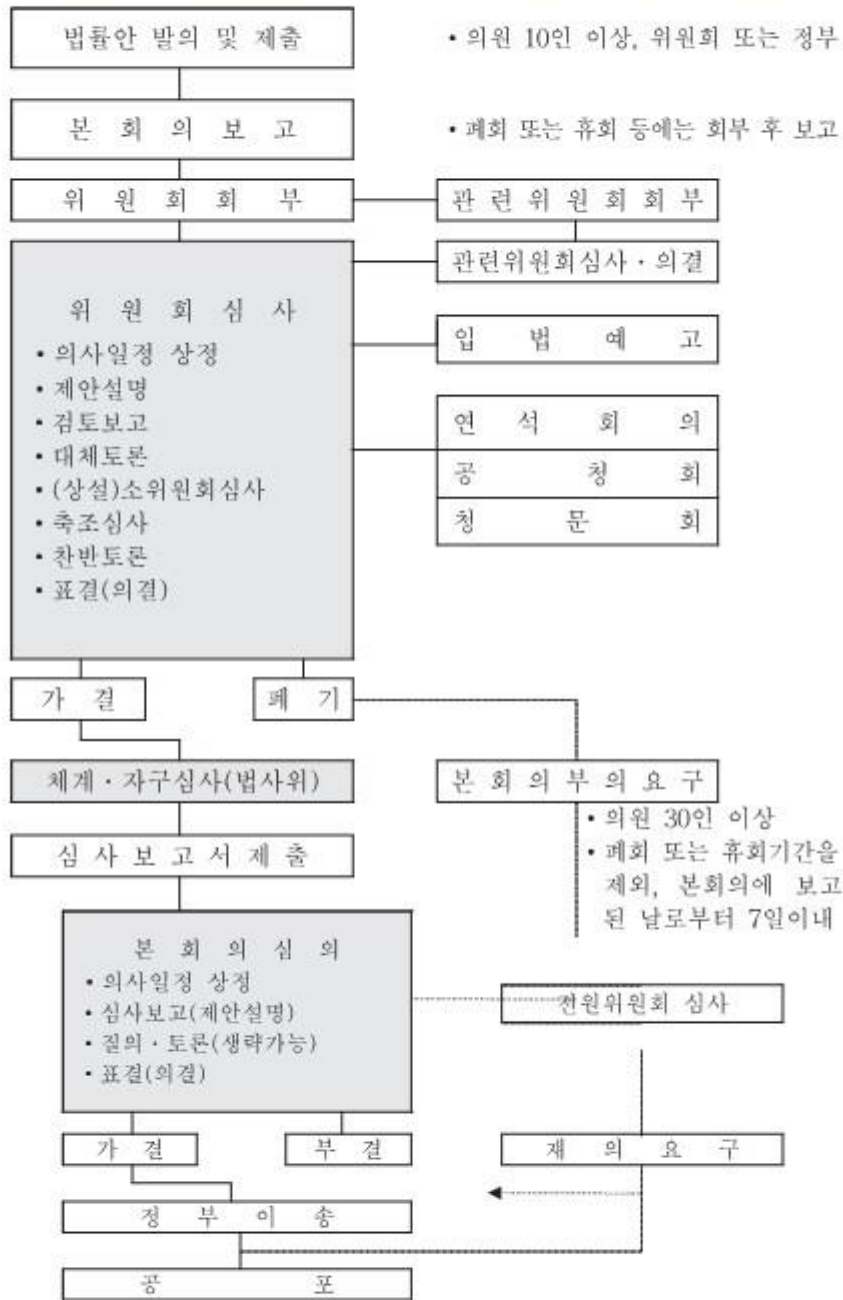
II 의안처리 과정 및 주요쟁점사항

의안처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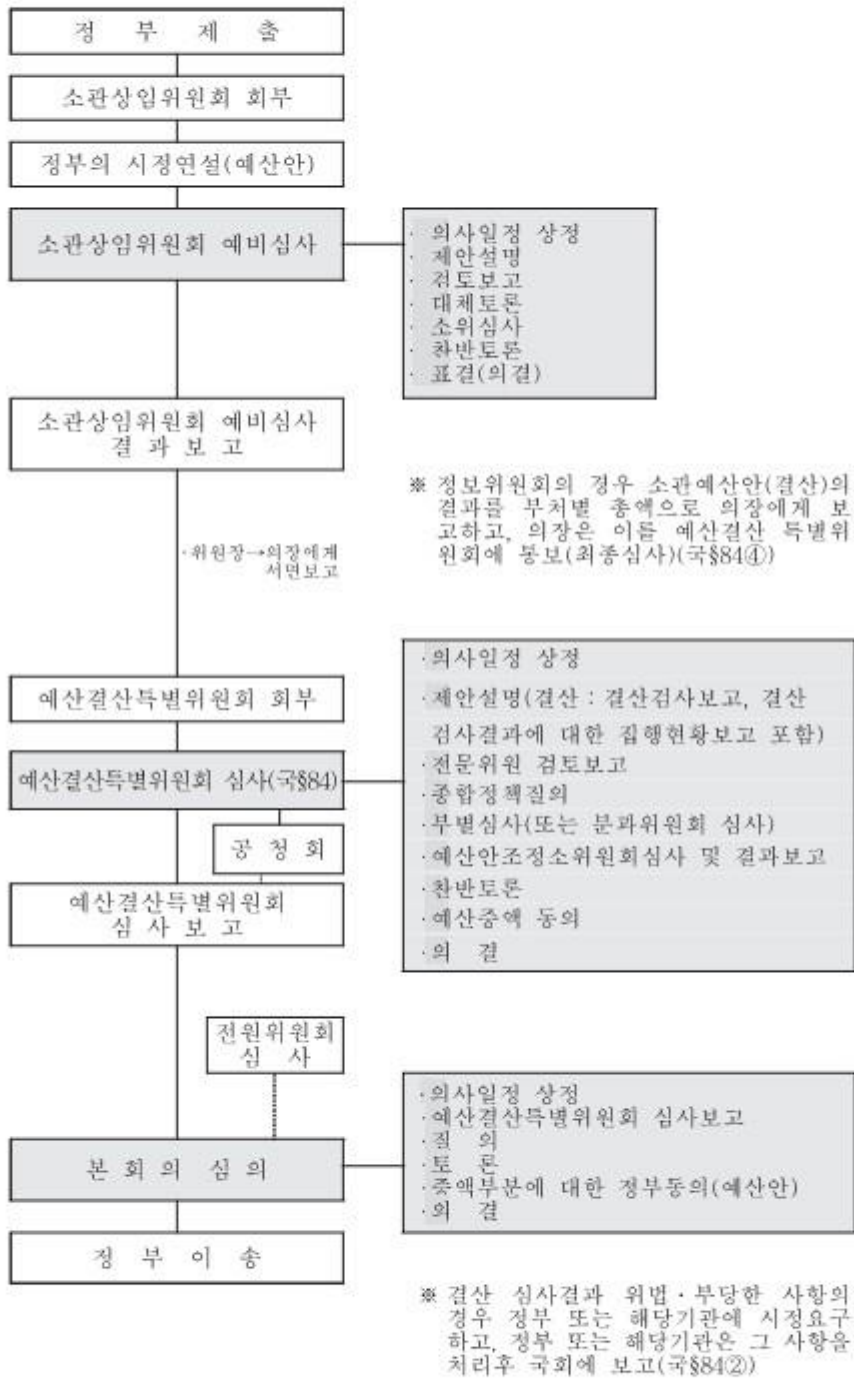


- 직권상정 요건 강화 : ① 천재지변,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법률안 처리절차도



예산안·결산 처리절차도



1 의안 숙려제 및 자동상정 (§ 59, § 59의2)

가 주요내용

● 의안(예산안등 제외) 숙려제

-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 기간 경과 전까지 상정금지
 - 단,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예외

의안의 상정시기 제한 (다만, 위원회 의결 예외)	① 일부개정법률안 : 15일
	②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 20일
	③ 체제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 : 5일
	④ 법률안 외의 의안 : 20일

* 예산안등 : 예산안, 기금안, BTL안

● 의안(예산안등 제외)의 상정간주

- 의안(예산안등 제외)은 숙려기간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 간주
 - 단,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예외

나 심화학습

(1) 의안숙려제 관련

● 상정시기 제한의 예외

-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 :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위원회제안법률안 제외
- 법률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예 :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등)

(2) 의안의 자동상정 관련

- 상정간주제 대상 및 적용예외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의 적용여부
 -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과 병합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된 의안(국 §58④)의 적용여부 등
- 국회법 제49조제2항과의 관계
 - 의사일정 작성권한을 가진 위원장의 권한 침해 여부
 - 상정 간주된 의안의 의사일정 포함여부 및 기재방식
 - 의사진행 : 검토보고, 제안설명, 대체토론 등 후속심사 절차는?
- 상정 간주된 의안의 처리절차 및 다음차수 의사일정
 - 상정 간주된 의안의 당일 심사 및 상정행위의 의미
 - 의사일정 중 심사 미종료 안건(국 §78) : 다시 그 일정을 정함

국회법 관련 조문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례연습

■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사일정 협의 관련 상황 ■

00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30인이며, A 교섭단체 17인, B 교섭단체 10인, 비교섭 3인으로 구성됨. 위원장은 A교섭단체 소속이며, A 교섭단체 간사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B 교섭단체 간사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현재, 특정현안의 발생으로 A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B교섭단체에서는 긴급현안 보고와 법안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00위원회 위원장은 특정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00일 00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안을 심사하자고 각 간사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00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일의사일정(안)을 각 간사실에 송부하였음.

B교섭단체 간사는 긴급현안보고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법안 심사만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합의한 적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①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사일정 작성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위원장은 B교섭단체 간사가 반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협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③ 무소속 의원은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로 당일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안을 통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상정에 반대하는 경우 무소속 위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기정사실 논의 시 주의사항

● 국회의장 협의의 권위의 문제

-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 ^^직권상정하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팩시밀리로 의사일정안을 송부한 이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010 헌라5, 2012.2.23.)

● **전화나 구두로 진행된 합의의 효력**

- 헌법재판소 결정례 소개

● **의사일정 변경과 위원회 준용**

- 구두 동의 가능여부 : 의사일정 변경동의 시 이유서 첨부(국회법 제 77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및 관련 사례

라 **국회법 관련 조문**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최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 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의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2 안전 신속처리제(Fast Track 제도) (§ 85의2)

가 주요내용

● 지정대상 안전

- ◆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
- ◆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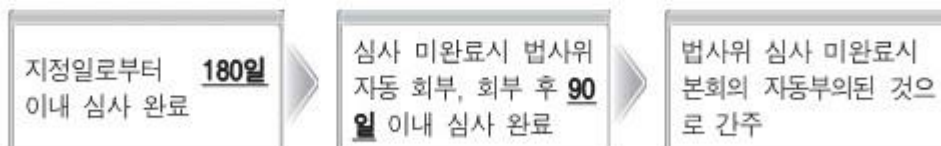
● 대상안전 지정요건 및 지정

- ◆ ①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 → 5분의 3 이상 찬성의결로 지정
- ◆ ②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 → 5분의 3 이상 찬성의결로 지정
 - 지정요구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 ◆ 의장은 지정요구 동의가 가결된 때 해당 안전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 * 지정된 안전이 대안반영으로 폐기되는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간주
 -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심사 중인 안전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면 심사기간 제한 및 본회의 자동부의 등 미적용

● 지정안전의 심사기간 제한 및 본회의 자동부의 등

(1) 위원회 단계에서 지정된 경우

법률안·국회규칙안



법률안 외의 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심사 완료

심사 미완료시 본회의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

(2) 법사위(체계 · 자구) 단계에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완료

심사 미완료시 본회의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

-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함.
- 자동부의된 안건이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4 심화학습

(1)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주체 및 적용예외

- 체계 · 자구 의뢰된 법률안의 지정 주체 : 소관 위원회 or 법사위?
- 적용 대상 및 적용 예외 여부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적용여부
 - 세입예산 부수법안 적용여부
 - 결산 적용여부
 -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적용여부 등

(2) 신속처리대상안건 표결 관련

- 소관 상임위원장이 지정요구 동의가 제출된 이후 표결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한 교섭단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및 한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향은?

- 소관 위원회에서 국회법 제112조제2항 및 제71조에 따라 투표방법 변경요구가 제출된다면 투표방법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3) 본회의 부의 및 안전상정

- 위원회에서 180일의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가 종료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가 끝나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경우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89일에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경우) 본회의 상정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다 사례 연습

■ 신속처리 관련 상황

○ OO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30인이며, A교섭단체 17인, B교섭단체 10인, 비교섭 3인으로 구성됨. A 교섭단체 소속위원 17인은 OO위원회에서 관련 안건들을 최초 상정 시 소속 위원 전체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였고, 위원장은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3/5 이상인 19인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 ① oo위원회가 상임위 또는 법사위원일 경우 기간 계산은?
- ② oo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이고,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특위 활동기간 종료이후 신속처리단계별 기간 계산은?
- ③ 안건조정을 위한 활동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처리 기간 180일이 도과한 경우 법안의 처리는?

답안 작성자료 숙제 및 크리자공

- 상임위와 특별위의 차이 이해 : 법사위 고유법안의 특성
 - 법사위의 경우 고유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아니함. 따라서 18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됨.
- 국회의정기간 경과 후 의회의 처리

- 법사위 고유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지정 동의를 가결될 경우,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위 활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와 180일 이전에 특위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의 차이 이해

● 3항과 3항단서의 차이

- 신속처리대상안전제도 신설 당시 법사위 고유법은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
- 2018년 4월 국회법 한글화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 시 법사위 신속처리안전 심사기간 규정 중 본회의 부의 간주 규정인 제85조의2 제5항의 내용 중 “제3항”부분을 “제3항 단서”로 개정함에 따라 법 규정만으로는 법사위 고유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전의 본회의 부의 시기가 불명확함.

● 안전조정과 신속처리 관계의 이해

라 국회법 관련 조문

제85조의2(안전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전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전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전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가 주요내용

● 내 용

- ◆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전(예산안등 및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외)의 심사를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의원 동수(각 3인)로 위원회에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활용

● 조정개시

- ◆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조정위 구성 후 안전을 회부받아 조정 개시
 - 조정 대상 안전은 대체토론 종료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 가능

● 조정위 활동기한

- ◆ 구성일로부터 90일(위원장·간사합의로, 구성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음.)
 - * 조정대상 안전이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서 법사위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조정위 종료

● 조정위 구성 및 운영

- ◆ 여·야 동수(각 3인)로 6인 조정위 구성
 -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로 선임
- ◆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선출
 - 위원장이 의장에게 선출결과를 보고
- ◆ 조정안(타협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조정안은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 ◆ 조정위 활동기한 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
 - 위원장은 해당 안전을 소위원회에 회부(이미 소위심사결과가 전체회의에 보고된 안전은 전체 위원회 회의 심사상태에 놓임)
 - * 조정위에 회부되어 있는 안전은 위원회에서 표결할 수 없음.

나 심화학습

(1) 안전조정 대상 및 적용예외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
- 이미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적용여부
- 세입예산 부수법안 적용여부
- 결산 적용여부 등

(2) 조정위원장 선출 관련

- 제1차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는 누가 어떻게 통보하는지?
- 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시 누가 사회를 보는지?
- 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회자가 회의를 산회하는 등 위원장 선출을 방해할 경우 상대방 교섭단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3) 조정위원회 구성시점 및 활동기한

- 구성일로부터 90일 동안 활동 : 구성일의 기산 시점?

(4) 여러개의 안전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조정위 구성

- 동일한 안건으로 여러 개의 조정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 조정요구 대상안건에 교집합이 존재하나 다른 대상안건이 포함된 조정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안전조정위 구성 취지가 유사한 법안)

(5) 조정위에 안전 추가 회부

- 회부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로 해당 조정위에 회부하여 심사(국 §58④ 준용)

다 사례 연습

■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상황

▫ OO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교섭단체 소속 위원 1인의 찬성과 다른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던 안건을 전체회의로 가져와서 상정하려고 하자 B교섭단체 소속 간사와 위원들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였음.

- ① B교섭단체 간사는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상대 교섭단체 소속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시점 및 활동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조정위원회로의 안건회부 주체는? (위원장, 위원회, 자동회부)
- ④ 안건조정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며칠이 지나고 동일법명의 법안(발의자 상의, 기 제출된 안건조정요구의 취지가 유사)에 대하여 안건조정요구서가 위원들의 연서로 제출될 경우 처리 절차는 ?
-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② 비상사태 논의 시 조처사항

● 조정위원회의 안건

- 교섭단체에서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위원회의 구성시점이 행위 적절 및 활동기한에 관한 위헌권리

-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헌재 2020.5.27. 2019헌라5).

● **조정위원회 회부에 대한 위원회 사례 유형**

- 위원회 의결을 통한 회부, 위원장 시나리오를 통한 회부, 자동회부 간주

● **복수 조정요구서 관련 선례**

- 동시에 다수의 조정요구서가 제출되거나, 다른 날 유사한 취지로 조정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조정위원회 구성 방법은?

● **소위 의결법안에 대한 안전조정 요구**

- 사례 :
- 동조 제8항에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경우 안전조정 부결 시 소위원회 회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안전조정 요구 가능

라 **국회법 관련 조문**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전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 주요내용

-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부의제 도입
 - ◆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 48시간 전까지 심사 미종료시 12월 1일에 본회의 자동부의 간주
 - 예산안등 : 상임위·예결특위 → 본회의 자동부의 간주
 - * 예산안등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BTL한도액안을 의미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 상임위·법사위 → 본회의 자동부의 간주
 -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로 12월 1일에 본회의 자동부의하지 않을 수 있음.
 - ◆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인 경우 의장은 그 중 일부만을 부의할 수 있음.
 -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여부는 의원(정부) 발의(제출)시 이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
 - ◆ 지정된 부수법률안이 대안반영 폐기되는 경우 그 대안을 부수법률안으로 간주
- ※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무제한토론 관련 절차는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함(제106조의2제10항).

나 심화학습

(1) 예산안등 및 세입부수법률안의 자동부의와 다른 조문과의 관계

- 안전신속처리제(국 §85조의2) 대상과 자동부의
- 위원회 안전조정제도(국 §57조의2) 대상과 자동부의

(2) 동일 제명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

- 일부 법률안만 본회의 부의
 - 같은 날 본회의에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 2건 의결 곤란, 동일제명의 의안을 처리한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 본회의 수정동의의 한계(國 §95조⑤)와 의안처리
 -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 있어야 함. (단 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과 합의를 예외)
 - 직접 관련성이 없는 내용의 추가 방안은?

다 사례연습

■ 수개의 수정안 제출 상황 등

▫ 특정안건에 대해 각 교섭단체에서는 여러 개의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음.

- 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수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의 기준은 ?
- ② 여러 개의 수정동의 제출 시 표결 순서는? (각 교섭단체에서는 수개의 수정안을 준비하여 서로 나중에 제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토론종결 전에 거의 동시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③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내용에 상관없이 의결하지 않는 것인지?

① 개정안의 본의 및 개정의 정도

● 개정법안의 입안 과정 및 의결 관련성 기준

인용 : 헌법재판소는 원안이 본래의 취지나 성격을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2005,6,30)에서 가결·선포한 행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청구(2005,7,8)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선고(2006,2,23.)

이후,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 본회의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직접 관련성 기준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2020. 5. 27.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 수정안 표결 순서에 대한 실제 사례

- 기준 :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수정안 가결 시 원안 표결여부에 대한 사례 및 법개정 이후 현재는?

의안명	수정안발의자	수정안 처리 경과
96년산추곡,97년산추하곡의매입가격과매입양결정 및 97양곡년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①박상천의원등 14인 외 115인 ②이상득의원등 3인 외 33인	②가결 ①의결불요로 미표결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①변정일의원 외 69인 ②이부영의원 외 60인 ③박상천의원 등 3인 외 100인	②가결 ③의결불요로 미표결 ①부결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나중에 제출한 의원 양해) ※②,③ 양립불가/① 양립가능

라 국회법 관련 조문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가 주요내용

- 내용 : 일정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발언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 실시
 -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이 종결되지 않는 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회 없이 회의를 계속함.
 - 의사정족수 미달된 경우도 무제한 토론 발언 신청이 있는 한 계속 진행
- 적용대상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개시 요건
 -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로 개시
 - * 요구는 대상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 본회의 개의 중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종결 전까지 제출
 - * 토론 종결 선포 또는 해당 회기 종료로 토론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다시 무제한 토론 요구 불가
- 의원 발언횟수
 - ◆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하여 무제한 토론 가능
- 종결 요건
 - ①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종결
 -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 필요
 - 종결동의는 제출 24시간 경과 후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
 - ②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토론을 종결

③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 종료시 무제한 토론은 종결선포된 것으로 간주

-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함.

* 토론 종결 선포 또는 선포 간주된 경우에는 당해 회기 또는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해야 함.

※ 예산안 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관련 절차는 당해 연도 12월 1일 자정까지 적용

나 심화학습

(1) 무제한 토론 적용대상 및 적용예외

● 국회법상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적용여부

- 비공개회의의 동의(국 §75조②)
-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국 §77조 후단)
-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국 §106조의2⑥)
- 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국 §108조③)
-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국 §117조④)
- 의원사직의 건(국 §135조③)

● 선례에 의한 경우의 적용여부

- 인사에 관한 안건(체포동의안, 해임건의안, 임명동의안 등)
- 기타(회의중지 또는 산회의 동의 등)

(2)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국 §145조③)

- 정회 또는 산회 가능?

(3) 의원의 토론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의원이 스스로 발언대를 내려오는 경우?
- 발언시작 전·후 상당시간 발언하지 않을 경우?

- 의제외 발언금지 규정(\$102조), 모욕등 발언금지 규정(\$146조)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제지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의원에 대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145조②) ?

다 사례연습

■ 무제한 토론 요구 상황

◦ B교섭단체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였음.

- 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 일괄하여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지 여부
- ② 원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이후 본회의 수정안에 대하여도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지 여부
- ③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이후 24시간 경과 시 토론하고 있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발언을 중단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발언이 끝나고 표결하는가?
- ④ 무제한 토론 종료 이후 다음 회기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무제한 토론을 마친 안건 중 어느 안건을 먼저 표결하여야 하는지?

(1)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 회기 결정의 건(일정안으로 가능한)

-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해당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개시되어 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폐회될 때까지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 (중략)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있는

안건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회기결정의 건'은 해당 회기가 종료된 후 소집된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도 반한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 **무제한토론 실제 운영 사례**

- 무제한토론과 토론과의 관계, 안전별로 토론 실시 등

● **의사일정 상정 순서의 이해**

※ **우리나라 최초의 무제한 토론 관련 오해와 진실**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제한 토론을 한 분은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의원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소개함. 과연 사실일까?

사례 : 1964년 4월 20일(제6대국회 제41회 제19차 회의)에 김대중의원이 동료의원인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건을 제출하고 그 제안설명을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여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음(폐회중 김준연의원 구속후 안전 폐기)

※ 김대중의원 사례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장시간 발언을 한 사례로 포괄적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토론"에 국한된 제한적인 필리버스터 제도인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과는 차이가 있음. 즉 무제한 토론과 필리버스터를 동일시하는 오류임.

※ 참고로 당시규정(제헌~1973년)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는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없어서, 제안설명,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한 구분 없이 포괄적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였음. 만일 이와 동일한 사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건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장시간 시도할 경우는?

라 국회법 관련 조문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가 주요내용

-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 ① 천재지변의 경우,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단, ①·②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안전에 한함.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협의 필요
 -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 ※ 국회법 개정 이전의 심사기간 지정제도
 -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회법 제84조 제6항과의 관계
 -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사례

- 소관 위원회에 심사기간 지정하여 처리한 사례(국§85①)
 - 2014년 12월 2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014년 12월 2일 18:00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되어 원안의결함.
 - 2016년 2월 2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 13:30까지 심사기간을 지정(국

회법 제85조제1항제2호)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6년 2월 23일 본회의 부의되었고, 필리버스터 후 2016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본회의 수정안)하였음.

※ 테러방지법안 사례 : 이 사례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의 테러 위협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판단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한 사례임.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한 사례(국§86②)**

-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2017년 3월 30일 13:55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되어 수정의결하였음.

☐ **국회법 관련 조문**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

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6조(체제·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가 주요내용

● 내 용

- ◆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도록 함.
 -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본회의 의결(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 요구대상 안건

- ◆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체계자구심사가 의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

● 요구주체 :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

● 요구요건

- ◆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요구

●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후 절차

- ◆ 위원장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함.
 -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일반의결정족수)

나 심화학습

(1) 간사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절차

-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이 표결을 위한 회의를 열지 않거나, 다른 안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는 경우 상대편 교섭단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 최근 이에 대한 의장님 의견제시 내용은?

다 사례연습 I

■ 법사위 회부 이후 심사지연 상황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사가 지연되어 회부된 날부터 120일이 지난 상황임.

- ① 법사위 체계 지구 심사 지연의 경우 안건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② 해당 안건의 성격이 제85조제1항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기간 지정 사례는 ?

(2) 가산시의 논의 및 고려사항

- 중재의 심사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3개 법상 의사결정 절차는?
 -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법사위 심사지연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심사기간 지정 등 각 요건 및 절차의 이해

● 실제 운영 사례

- 본회의 부의 요구

※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의결되어 같은 날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되었는데, 동 법률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353일째인 2017년 11월 17일까지도 심사 미완료 상태로 계류되어, 같은 날 기재위원장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간사 합의 하에 의장에게 동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2017년 12월 8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본회의 부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의결(본회의 수정안)되었다.

㉒ 국회법 관련 조문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8**위원회별 상이한 운영사례를 통한 국회법의 실제 적용**

- 사례를 통한 국회법 실제 해석 및 적용
 - ◆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는?
 - ◆ 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간사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인가?
 - ◆ 국회법 해석에 있어 사례가 가지는 의미는?

가**위원회 전체회의 운영과정**

- (1) 재적의원 1/4 개최요구에 따른 회의 운영사례 및 쟁점
 - 관련 규정 및 위원회별 사례
 - 위원장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 거부·기피 판단기준
 - 위원장 사회거부 시 안전처리 가능여부
- (2)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증액 및 재비목 설치 시 동의 절차
 - 사례 : 위원회별 또는 같은 위원회 내에서도 다르게 운영
 -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합리적 운영방안은 ?
- (3) 동일취지의 청원심사 처리
 - 일반의안과 다른 청원심사의 특성 : 병합심사를 통한 대안 불가
 - 동일취지의 수개의 청원이 제출될 경우 합리적 운영방안은?

나**소위원회 운영과정**

- (1) 소위원회에 안전회부시 전체회의 의결여부
 - 관련 규정 및 위원회별 사례
 - 합리적 운영기준은?

(2)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한 의결 필요 여부

- 관련 규정 및 위원회별 사례
- 합리적 운영기준은?

(3) 소위원회 의사일정 및 개최일시 결정

- 간사가 없는 소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관련 규정 및 위원회 운영 사례
- 합리적 운영기준은?

(4)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의 수정

- 관련 규정 및 위원회 운영 사례
- 소위원회 의결 안건의 전체회의 이송 시점?
- 의결안건의 수정방법 : 번안, 재회부 및 의결?

다 사례연습 I

1/4 개회요구 관련 상황

▫ B교섭단체 간사와 소속 위원들은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소속 위원 모두 참여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원장은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적 없으며, 간사간 현안보고를 할 의할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현안보고를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음.

- ① B 교섭단체 간사가 1/4 개회 요구에 따라 사회를 볼 수 있는 경우는 ?
- ② B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를 보면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지 여부
- ③ 위원장이 사전에 안건 상정 및 의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및 만약 B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④ 소위원회 1/4 개회요구 시 직무대행 문제 및 사례는?

(1) 가상사례 논의 시 고려사항

-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요건**
 - 위원장의 개최 거부 또는 기피의 판단 문제 및 회의준비는?
- **위원장 사회거부 시 위원장 직무대행의 업무범위**
 - 1/4 개최 요구 시 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례 및 무효선언 사례
- **위원장의 직무대리**
 -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산회한 사례
- **소위원회 1/4 개최요구 시 직무대행 가능여부**
 - 1/4 개최요구는 아니었으나, 간사 없는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의 사회거부에 따라 소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 안건을 심사하여 의결한 사례

라 국회법 관련 조문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최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결위원 (본회의) 의장의 소구가 있을 때

제57조(소위원회)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마 사례연습 II

■ 소위원회 안건 회부 관련 상황

▫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대체토론 뒤 관련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한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 ① 위원장은 좀 더 신속한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지 ?
- ② 과거 심사기간 지정의 방법(구두 또는 문서) 및 최근 이와 관련한 방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 ③ 소위원회 회부 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및 현재 위원회 사례 유형은?
- ④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규정과 의 차이점 및 법 개정 필요성?

(2) 각종회의 논의 및 안건상황

● 위원회 운영실정서 제시기간 조달 실적

① 권리제한특지 위원장의 구급발령에 관한 중재기간 지정

위원회	안전명	심사기간 지정일자	주요사항
건설교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05.12.23 (제17대국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회의)	○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구두로 동 안전에 대하여 12월 27일까지 심사기간 지정 ○ 소위원회가 기한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12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 후 의결
환경노동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등 3건	'06.02.17 (제17대국회 제258회 임시회 제6차회의)	○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구두로 동 안전에 대하여 2월 20일 14:00까지 심사기간 지정 ○ 소위원회가 기한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2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 후 의결
국방	국군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국방개혁 관련법안 7건	'11.11.22 (제18대국회 제303회 정기회 제8차회의)	○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구두로 동 안전에 대하여 11월 29일까지 심사기간 지정

- 문서에 의한 심사기한 지정

위원회	안전명	심사기간 지정일자	주요사항
법제사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10건	'06.07.20 연장: '06.07.23 (제17대국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 위원장이 문서로 동 안전에 대하여 7월 27일까지 심사기간 지정 (※ 이후 8월 31일까지 연장) ○ 이후 소위원회에서 11월 21일 심사를 완료한 후 1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 결
환경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9건	'06.12.08 (제17대국회 제262회 정기회)	○ 위원장이 문서로 동 안전에 대하여 12월 8 일 19:00까지 심사기간 지정 ○ 소위원회가 기한내에 심사를 완료하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국토해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09.02.26 (제18대국회 제281회 임시회)	○ 위원장이 문서로 동 안전에 대하여 2월 27 일 10:30까지 심사기간 지정 ○ 소위원회가 기한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4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 후 의결

- 심사기간 지정 방식이 현재 잘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소위심사지연 부분에서 설명)

● **소위원회 회부 관련 사례 및 법률안과 청원회부 관련 규정의 차이**

- 관련 사례 유형 : 의결, 사전위임, 시나리오처리
- 청원의 경우 회부권한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명시

바 **국회법 관련 조문**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사 사례연습 III

■ 소위원회 위원개선 및 의사일정 작성관련 상황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사·보임됨에 따라 OO위원회는 소위원을 개선할 필요성이 생겼음. 또한 소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B교섭단체 소속 위원인 소위원장은 현안보고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위원회 의사일정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음.

- ① 소위원회 위원 개선 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②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결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
- ③ 소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회거부로 간주하여 1/4 개회요구를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지?

(1) 가상사례 논의 시 고려사항

● 소위원회 개선과 관련한 위원회의 사례 분석

- 의결 또는 사전 위임에 의한 개선

※ 소위원회 회부, 위원 개선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위원장 간사 간 사전 협의

※ 소위원장인 위원이 사보임 되었을 때

● 간사 없는 소위원회 운영의 특성

- 소위원장의 단독결정, 전체 소위원회 위원과 협의, 간사역할 의원과 협의, 위원회 간사와 협의 등 사례 유형이 위원회마다 다름.

● 소위원장 직무대리

- 결위 시 제50조제4항 준용가능? 소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출할 시간이 없는 등의 문제시 긴급한 의안 처리 방법은?
- 제52조에 따른 1/4 개최요구 준용가능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 거부 시 직무대리한 사례는?

아 국회법 관련 조문

제50조(간사) ④ 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최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57조(소위원회)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
 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
 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자 사례연습 IV

■ 소위원회 심사지연 및 전체회의 상정 관련상황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OO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함.

- ①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체회의로 가져와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
 수적인지 여부?
- ② 현재 다수의 위원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
 기를 원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안건
 을 제외한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공지한 후 회의를 개최하였음. 소위원회에 계
 류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1) 기실사내 회의 세 조조 방법

● 소위원회 심사지연 시 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 결번 및 위원장의
 전체회의 상정하는 절차방법 연구함

- 심시기간 지정, 위원회안 제안, 소위원장 직무대리?, 전체회의 직접 상정

● 의결로 회부 시 상정 가능한 절차방법 연구

- 동의자 외 찬성자 1인의 서면 동의 후 의사일정 추가 상정

차 국회법 관련 조문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카 사례연습 V

1 소위원회 의결 법안 수정 필요 상황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이후 위원장 간사간 논의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임.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수정해야 할 상황을 전제로 함)

- 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수정한 사례 및 의사진행 절차는?
- ②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전체회의로 이송되는 시점은 ?

(2) 개정지시 논의 및 내부심장

● 위원회 운영 기록 작성

소위원회 번안	소위원회 재심사 (전체회의 재회부○)	소위원회 재심사 (전체회의 재회부×)
국회법 § 91②-§ 57⑦	국회법 § 94-§ 57⑦	근거규정 없음
번안동의 제출+번안동의 (재적 과반수+출석 2/3)	전체회의 재회부+소위 의결 (재적 과반수+출석 과반수)	- (재적 과반수+출석 과반수)
2002년도 예산안(동외 2001.11.13),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교육, 2007.11.15) 등	2006년도 예산안 (재정, 2005.12.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방, 2009. 4.2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식품, 2011.01.12)	2009년도 1차추경안 (농식품, 2009. 4.16) ※ 번안의 건으로 처리되지 않음.

● 소위원회 의결 안건의 전체회의로 이송시점

- 소위원회 의결 후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상정·심사보고된 때에 이송된다는 견해
 - 전체회의 상정·심사보고 전 : 소위원회에서 번안하여 수정
 - 전체회의 상정·심사보고 후 : 전체회의로부터 재회부 받아 수정
- 소위원회 의결 후 안건이 전체회의로 자동 이송된다는 견해
 - 전체회의로부터 재회부 받아 수정

타 국회법 관련 조문

제91조(번안)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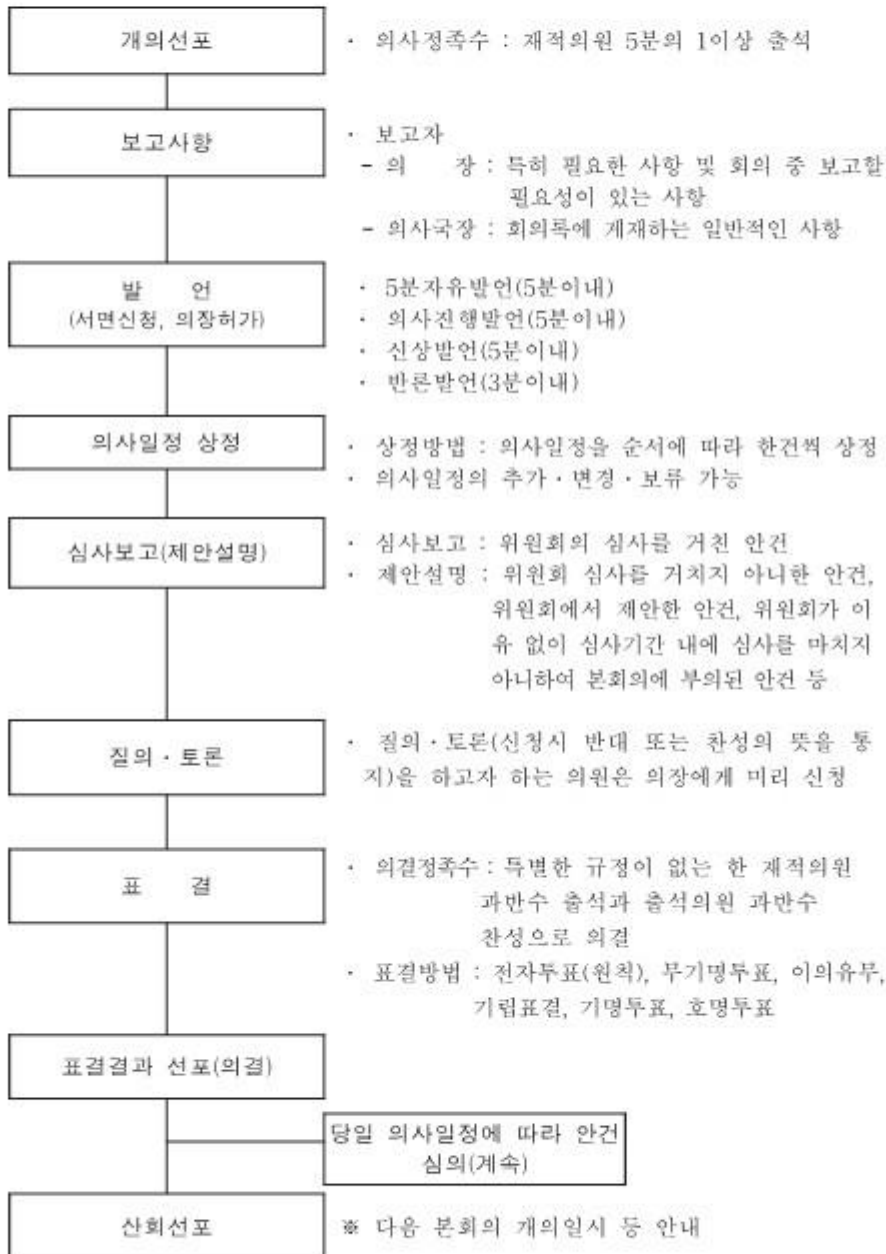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소위원회)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본회의 진행절차도



나 사례연습 1

1 본회의 제안설명, 질의, 토론 관련 상황

○ ○○ 위원회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됨.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B 교섭단체 소속위원에게 맡겼음.

- ① B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단상에 올랐으나 장내소란 상태에서 제안설명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 ② 해당위원이 제안설명을 시작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사진행방해로서 제안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 ③ 질의 또는 토론과 관련하여 양 교섭단체에서는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토론 또는 질의 신청 이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 교섭단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 가장자리 문제 및 기타사항

● 제안설명의 대체 및 의사진행 절차

-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헌재 2008. 4. 24. 2006헌라2, 판례집 20-1상, 438, 447)

● 질의 또는 토론의 생략

- 의장인 피청구인으로서 질의·토론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우선 질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질의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신청도 없는지 확인한 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 운영상 질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이고(헌재 2006. 2. 23. 2005헌라6, 판례집 18-1상, 82, 92; 헌재 2008. 4. 24. 2006헌라2, 판례

집 20-1상, 438, 447 참조), 질의·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국회법 제99조 제1항), 이 사건 안건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미리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신청이 없었다면 곧바로 표결 절차로 진행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2010헌라5, 2012. 2. 23)

● **질의 또는 토론 생략 의결 없이 토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라 하더라도 '질의 또는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 및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판례집 21-2하, 14, 50 참조).

다. 국회법 관련 조문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9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사례연습 II

I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 상황

◦ B교섭단체에서는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음.

- ① B교섭단체는 제63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 모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 사례는?
- ② 전원위원회에서 해당안건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의장처리의 원칙 및 심의사항

● 재적의원 1/4 이상 의원 제안

- 심사대상 예시 또는 열거? 전원위원회 개최 시 본회의 산회 또는 정회?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원위원회 개최가 의장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 운영은?

● 전원위원회 개최 요청

- 심사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없고, 위원회안 또는 대안을 제안할 수 없음.

마 국회법 관련 조문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전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간사) ①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 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받아 지명한다.

②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전원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전원위원회의 개회) ①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을 후에 개회한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을 날에 최초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을 날에 개회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다.

바 사례연습 III

■ 수개의 수정안 제출 상황 등

▫ 특정안건에 대해 각 교섭단체에서는 여러 개의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음.

- 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수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의 기준은?
- ② 여러 개의 수정동의 제출 시 표결 순서는? (각 교섭단체에서는 수개의 수정안을 준비하여 서로 나중에 제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토론종결 전에 거의 동시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③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내용에 상관없이 의결하지 않는 것인지?

(1) 개정안의 논의 세 교섭사실

● 수정 범위에 대한 개정 연혁 및 직접 관련성 기준

- 연혁 : 헌법재판소는 원안이 본래의 취지나 성격을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2005.6.30.)에서 가결·선포한 행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청구(2005.7.8.)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선고(2006.2.23.) 이후,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3.12.)에서 본회의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직접 관련성 기준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2020. 5. 27.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 수정안 표결 순서에 대한 실제 사례

- 기준 :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수정안 가결 시 원안 표결여부에 대한 사례 및 법개정이후 현재는?

의안명	수정안발의자	수정안 처리 경과
96년산추곡,97년산추하곡의매입가격과매입양결정 및 97양곡년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①박상천의원등 14인 외 115인 ②이상득의원등 3인 외 33인	②가결 ①의결불요로 미표결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①변정일의원 외 69인 ②이부영의원 외 60인 ③박상천의원 등 3인 외 100인	②가결 ③의결불요로 미표결 ①부결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나중에 제출한 의원 양해) ※②,③ 양립불가/① 양립가능

사 국회법 관련 조문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아 사례연습 IV

표결방법 변경요구 등 상황

- 안건 표결방법과 관련하여 한 교섭단체에서 1/5 이상의 요구로 해당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음.
- ① 다른 교섭단체는 해당 안건을 기명투표로 표결하자고 요구하였음. 해당 안건은 어떻게 표결하여야 하는지? 인사에 관한 안건에 대해 1/5 이상의 요구로 기명투표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표결방법은?
 - ② 해당 안건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 의원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결할 의도였으나, 투표기기 오류로 인해 기권처리 되었음. 의원이 투표기기의 오류를 주장하며 표결방법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 ③ 해당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경우 영패수와 투표수의 차이가 있었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영패수가 많은 경우, 투표수가 많은 경우, 재투표 기준은?)
 - ④ 표결이 실시되었고, 투표결과가 집계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종료하지 않고 다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1) 기명투표 찬성 세 과다확산

● 표결방법 변경 요구 되어 불결

대 별	안 건 명	국회법상 표결원칙	표결방법 변경요구	표결방법 표결결과	비 고
17대	국회의원(최연회) 사퇴 촉구 결의안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유승희 의원 외 64인)	표결하지 않음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 투표로 의결

대 별	안 건 명	국회법상 표결원칙	표결방법 변경요구	표결방법 표결결과	비 고	
20대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의유무 (관례)	무기명투표 (심재철 의원 외 107인)	-	12.13. 본회의 미개의 12.23.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11~12.16) 철회	
			기명투표 (이원욱 의원 외 128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	무기명투표 (심재철 의원 등 108인)	부결		모두 부결되어 전자투표로 의결
			기명투표 (이원욱 의원 외 128인)	부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자투표	무기명투표 (심재철, 권은희 의원 등 61인)	부결		모두 부결되어 전자투표로 의결
			기명투표 (이원욱 의원 외 128인)	부결		

● 표결결과의 정정 근거 및 사례

● 명폐수 투표수의 차이 및 재투표 기준

● 표결불성립의 개념과 이해

[2009헌라8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의견 중]

“이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 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전에 대한 표결 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

자 국회법 관련 조문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

조)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초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경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를 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4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영패를 영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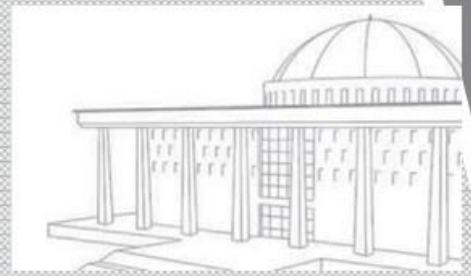
③ **투표의 수가 영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년도 한글속기학술연구 자료집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이해

김정아 국회사무처 서기관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이해



목 차

I. 인사청문제도 개관

1. 제도 도입 경과
2. 인사청문 대상
3. 실효성 보장제도

II.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

1. 헌법
2. 국회관계법: 국회법, 인청법 등
3. 개별 법률

III. 인사청문제도 특징

1. 인사청문 실시주체 이원화
2. 인사청문특위 자동 구성
3. 인사청문특위 위원정수 법정화

IV. 인사청문회 절차

1. 인사청문특위: 국무총리
2. 법제사법위 : 법무부장관
3. 절차 비교

V. 인사청문회 주요 사례

1.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부결·철회 등
2.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 사퇴
3. 인사청문특위 검증 실시 의결
4. 인사청문회 일부 비공개 진행
5.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국회의원 출석
6. 공직후보자 위증 고발
7. 인사청문회 미실시, 경과보고서 미채택 임명사례
8. 기타: 공직후보자 VS 증인

I. 인사청문제도 개관

1. 제도 도입 경과

□ 인사청문제도 도입 논의

- 1993년 국회제도개선위(의장자문) 도입 논의 시작
- 1996년 국회제도개선특위 도입 논의
- 1998년 10월 국회제도운영개혁위 도입 구체적 논의 및 정치개혁입법특위 심의

◆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전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하면,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에 대한 가부 결정함

□ 인사청문제도 도입

○ 제15대(2000. 2. 16.): 「국회법」 제65조의2 신설

※ 고위공직자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 적격성 여부 검증

<대 상>

- 국회동의: 대법원장, 헌재소장, 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 헌재재판관, 중앙선관위원

○ 제16대(2000. 6. 23.): 「인사청문회법」 제정

- 국회인사청문 절차법 마련

2. 인사청문 대상

2-1. 인사청문대상 확대

- 제15대 국회: 2000. 2. 16. 인사청문제도 도입(23인)
 - 국회동의 대상(17인): 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13인)
 - 국회선출 대상(6인): 헌법재판관(3인), 중앙선관위원(3인)

- 제16대 국회: 2003. 2. 4. (+4인)
 -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회법」 개정)

□ 제17대 국회: 「국회법」 등 개정 (+31인)

- 2005. 7. 28. 국무위원(+18인), 중앙선관위원(+6인)
헌재재판관(+5인)(대통령임명+3인, 대법원장지명+3)
(※ 헌법재판관 △1은 헌법재판소장 겸직)
- 2006.12.30. 합동참모의장(+1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
- 2008. 2. 29. 방송통신위원장 (+1인)(「방통위법」제정)

□ 제18대 국회: 2012. 3. 21. 「국회법」 개정 (+4인)

-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권위원장, 한국은행총재

□ 제19대 국회: 「국회법」 등 개정 (+2인) = 총 64인

- 2014. 3. 18.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법」 제정)
- 2014. 5. 28. 한국방송공사 사장 (「방송법」 개정)

구분	대상	인원
국회동의대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17인
국회신출대상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원 3인	6인
국무위원	국무위원	18인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1)	5인
중앙선관위원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6인
주요기관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12인

2-2.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별 구분

구분	인사청문특별위	소관상임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서 국회동의 필요 - 국회선출 대상자 - 대통령당선인 요청 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외 대통령 임명 - 대법원장 지명 - 대통령당선인 요청 국무위원
인사청문 실시 후	본회의 의결	본회의 보고
청문경과 보고서 미채택	본회의 의결 절차 필수	대통령(대법원장) 임명(지명) 가능
계	23인	41인

3. 실효성 보장제도

- **자료제출요구 및 기관 등의 수인의무** (인청법 제12조)
 -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기관 경고 등 필요 조치 요구
- **검증제도 및 동행명령제도** (인청법 제13조, 제19조)
 - 검증은 자료조사와 증언을 통해 수집정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할 것을 명령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인청법 제19조)
 - 증인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죄,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가능
- **검찰에의 고발** (인청법 제19조)
 - 검사는 고발장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사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Ⅱ.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

1. 헌법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
- 또한 헌법재판관(3인) 및 중앙선관위원(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토록 규정함

2. 국회관계법

국회법

- 실시근거(제65조의2), 청문대상(제46조의3제1항, 제65조의2제2항)

인사청문회법

- 인사청문특위 구성·운영/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 규정

국회법, 국감조법, 증감법

-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관계법 준용

3. 개별 법률

- 개별 법률에서도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로서 국회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헌법재판소법(헌재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법(중앙선관위원)
 - 국가공무원법(국무위원, 국세청장)
 -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장)
 -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장), 검찰청법(검찰총장)
 - 경찰법(경찰청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합동참모의장)
 - 특별감찰관법(특별감찰관), 방송법(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Ⅲ. 인사청문제도 특징

1. 인사청문회 실시주체 이원화

- 인사청문특위: 헌법에서 임명에 국회동의 등 요
- 소관 상임위 :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 실시 대상

구분	인사청문특별위	소관상임위
대상	- 국회동의 대상자 - 국회선출 대상자 - 대통령당선인 요청 총리	- 헌법외 대통령 임명 - 대법원장 지명 - 대통령당선인 요청 국무위원
계	23인	41인

2. 인사청문특위 자동구성

- 통상적인 특위구성과 달리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인청법3①)

<통상적인 특위구성 절차>

- 운영위 특위구성결의안 제안→본회의 의결
- ※ 결의안에 특위 명칭, 위원 수, 활동기간 등 명시

<상설 특위>

- 국회법에 따라 구성: 예산결산특별위
- ※ 윤리특위는 국회법 개정('18.7.17)으로 상설특위에서 제외

3. 인사청문특위 위원정수 법정화

- 상임위 위원정수는 규칙¹⁾에서 정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특위 위원정수는 법률에서 13인으로 규정함(인청법3②)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정수>

- 국회법: 전원위원회(300인, 의원 전원), 예산결산특위(50인), 정보위(12인), 안건조정위(6인) / 윤리특위(15인)
- 인청법: 인사청문특(13인)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운영위 의결→법사위 의결→본회의 의결)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18.7.16. 국회규칙 제214호)

1. 국회운영위원회	28 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 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 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명
3. 정무위원회	24 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 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 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2 명
5. 교육위원회	16 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 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 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 명
7. 외교통일위원회	22 명	16. 정보위원회	12 명
8. 국방위원회	17 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 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 명		

(국회법규시스템)

IV. 인사청문회 절차

1. 인사청문특위 : 국무총리

(1) 임명동의안 국회제출 : 2019. 12. 20.

○ 제출자: 대통령

-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²⁾
- 임명동의안에는 주문과 요청이유, 증빙서류를 첨부

2) 「인사청문회법」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능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24334
----------	-------

제출연월일 : 2019.12.
제 출 자 : 대통령

주 문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정세균)의 임명에 동의한다.

요청이유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 성 명 : 정세균(丁世均)
- 생년월일 : 1950년 9월 26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x길 x, xxx동 xxx호(사직동, xxxxxxxxxxx)

※ 불 입

1.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 요청 대상자

- 성 명 : 정 세 균 (丁世均)
- 생년월일 : 1950년 9월 26일

2. 임명동의 요청사유

- 새 국무총리는 당면한 대내외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해 민생과 경제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를 내는 한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음
- 또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여야와 소통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힘차게 이끌어 나가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음.
(이하 생략)

(의안정보시스템)

(2) 인사청문특위 구성 : 2019. 12. 20.

-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시 구성된 것으로 봄³⁾
 - 비상설특위(본회의 의결로 구성)는 폐회·휴회 및 기타사유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구성할 수 없음
 - 인청특위 구성 규정은, 미구성 시 인사청문이 지연되어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인사청문편람, p.56.)*

3) 「인사청문회법」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3)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 2019. 12. 26.

- 위원정수는 13인이고, 위원선임은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 선임(비교섭은 의장 선임)
- 위원선임 지연방지를 위해, 청문특위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 선임 요청하여야 함. 미요청시 의장 선임가능⁴⁾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박광온 박병석 원혜영 김영호 박경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2019. 12. 26
나경원 김상훈 주호영 성일종 김현아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윤소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4) 「인사청문회법」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③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4) 인사청문회 준비(제1차 회의): 2019. 12. 30.

- 1차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선임 및 청문계획서 등 채택함
 - 청문특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상임위원장과 달리 위원회에서 호선함. (위원장선임 위한 회의는 연장자가 주재)
- 또한, 인사청문계획서 및 증인출석,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함

<통상적인 총리 인사청문절차>

- 1차 회의: 위원장·간사 선임, 청문계획서 채택,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 2차 회의: 공직후보자 모두발언, 위원질의(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 3차 회의: (오전)위원질의 (오후)증인신문, (신문 후)위원질의
- 4차 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74회국회
(임시회)

국무총리(정세균)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일 시 2019년12월30일(월)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6. 자료제출요구의 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원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원혜영 위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온 위원** 나경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원혜영** 감사합니다.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장직무대행,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4.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나경원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정세균)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안건은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1월 7일과 1월 8일 양일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는 추후 논의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은 첫째 날에는 국무총리후보자의 모두발언 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둘째 날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오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 등은 방송 중계 일정 등을 감안해서 ...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료제출요구의 건

○ 위원장 나경원 그리고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서 먼저 의사일정 6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금 원래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는데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의결할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되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순서지만 (...) 이 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속개 시간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제2차 회의): 2020. 1. 3

○ 1차 회의에서 미의결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

의사일정

1.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나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간사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증인 4인, 참고인 5인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6-1) 인사청문회(1일차) 실시(제3차 회의): 2020. 1. 7.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후, 위원별 질의
-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

<p>의사일정</p> <p>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p>
<p>(10시00분 개의)</p> <p>○ 위원장 나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p> <p>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 <p>오전에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습니다. (...)

-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공직후보자 정세균

-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생략)

-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질의, 후보자 답변)

- **위원장 나경원** (...)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 그러면 이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

(6-2) 인사청문회(2일차) 실시(제4차 회의): 2020. 1. 8.

**○ 통상 2일차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짐**

<p>의사일정</p> <p>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p>
<p>(10시00분 개의)</p> <p>○ 위원장 나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p> <p>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 4시경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을 추가로 듣고 국무총리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질의, 후보자 답변)</p>

○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4명이며 참고인은 5명입니다. 이 중 참고인 △△△, △△△ 그리고 △△△는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 바랍니다.

○ **증인 △△△**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참고인 질의 답변/ 증인 등 질의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질의 계속)

○ **위원장 나경원**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 김상훈 위원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 인사청문회법상의 검증위원회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 각 당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나경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나경원 검증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서로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당의 간사 위원님들께서 지금 12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2~3분 내로 짧게 검증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 간사 의견 개진)
- 위원장 나경원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이 검증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 더 청문 일자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시면 간사 간의 합의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합의로 갈음하는 것을 위임해 주시면 어떨까..... 아직 간사 간에 합의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
- 위원장 나경원 (...) 나중에 그 부분은 간사 간에 위임이 된 것으로 하고 (...) 원활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7)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⁵⁾

※ 정세균 총리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음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시 증인고발 등을 함께 의결하는 경우가 있음

※ 사례(2017.5.31.)

1.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5)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8)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 : 2020. 1. 13.

- 의장은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 등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인청법」 6①)
- 의장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바로 본회의 부의 가능 (「인청법」 9③)

제375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2020년1월13일(월) 오후 6시		
의사일정		
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2. ~ 8. (생략)		

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정세균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 설명)

○ 의장 문희상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78매입니다.

(…)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164, 부 109, 기권 1, 무효 4표로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관 상임위(법사위): 법무부장관

(1)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 2019. 12. 20.

○ 제출자: 대통령

-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
-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이유, 요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2. 11.

제 출 자 : 대통령

요청이유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 성 명 : 추미애(秋美愛)
- 생년월일 : 1958년 10월 23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xx길 xx, x동 xxx호(구의동, xxxxx아파트)

※ 불 입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부.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 성 명 : 추 미 애(秋美愛)
- 생년월일 : 1958년 10월 23일

2. 인사청문 요청사유

-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1981년 2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2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음
-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약 1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고, (이하 생략)

(의안정보시스템)

(2) 인사청문회 준비(제1차 회의): 2019. 12. 24.

- 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계획서 및 증인출석, 서류제출 요구 등을 의결함
- 상설화된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특위와 달리 특위구성, 위원선임, 위원장 및 간사선임 절차가 필요 없음

<통상적인 상임위 인사청문절차>

- 1차 회의: 청문계획서 채택,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 2차 회의: 공직후보자 모두발언, 위원질의, 증인신문
- 3차 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차회의에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제372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12월24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여상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를 12월 31일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여상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건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건을 상정하지 않고 추후에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사청문회 실시(제2차 회의): 2019. 12. 30.

○ 공직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후, 위원별 질의 순으로 진행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여상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법무부장관후보자** 추미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공직후보자 추미애

- **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후보자** 추미애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생략)
- **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후 위원질의 및 후보자 답변)
- **위원장** 여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 **법무부장관후보자** 추미애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략)
- **위원장** 여상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4)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함(인청법)⁶⁾

※ 추미애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음

6)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3. 절차 비교

구분	인사청문특위	소관상임위
국회제출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 구성	인청특위 구성, 위원선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필요	상임위는 위원장 선출, 간사 선임되어 있음
청문회 준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의결	
청문회 실시	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 위원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위원질의(계속), 후보자 마무리발언	
청문회 종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출석 증인, 위증 증인 등에 대한 고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	
본회의 동의	헌법에 따라 임명을 위한 필수 절차	본회의 동의 불요

보고서 미채택	정해진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 가능(인청법 9조③)	정해진 기간 내에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의 범위 안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위의 기간 내에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대법원장은 임명 또는 지명 가능(인청법 6조④) ※송부요청 절차가 빠지면 임명(지명) 불가
----------------	---	--

※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청문회를 실시하였음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라고 표기하는 경우

- ①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 인사청문요청안
 -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한 청문회이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심사경과보고서로 간주함. (인청법 10조③)
- ② 총선 이후나 상임위 임기가 끝난 직후 아직 상임위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
 -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회 진행. 이 경우 특위는 위에서 다룬 인사청문특위와는 다르며 일반 상임위로 간주.(국회법 62조의2④)

V. 인사청문회 주요 사례

1.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부결·철회 및 후보자 사퇴

○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결:

- 2002. 7. 31. : 총 투표수(244), 가(100), 부(142), 기권(1), 무효(1)
- 2002. 8. 28. : 총 투표수(266), 가(112), 부(151), 기권(3)

○ 임명동의안 대통령 철회

- 국회제출(2015.5.26), 청문특위회부(5.27), 철회(6.2)
- 국회제출(2010.8.12), 청문특위회부(8.12), 청문회실시(8.24-25), 철회(9.8)

○ 후보자 사퇴

- 대통령 지명(2013.1.24.), 총리후보자 사퇴(2013.1.29.)
- 대통령 지명(2014.6.10.), 총리후보자 사퇴(2014.6.24.)

2. 인사청문회 이후 후보자(장관) 사퇴

-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 : 2014. 6. 24
- 인사청문요청안 소관 상임위 회부 : 2014. 6. 24
- 인사청문회 실시 : 2014. 7. 10
 - * 정회 후 파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 : 2014. 7. 14
- ※ 대통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7.15) : 2014. 7. 16까지
- ※ 후보자 사퇴 : 2014. 7. 16

3. 인사청문특위 검증 실시 의결

- 국무총리 임명동의 인사청문특위(2015. 6. 5.)
 - * 법조윤리협의회 미제출자료 19건 확인을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문서검증을 비공개 실시키로 의결
- 검증을 위해 법조윤리협의회 방문(2015. 6. 6.)
 - * 인청특위 요구 자료는 사전 수인내용이 아닌 자문내역이라 국회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증에 불응
- 이후 인청특위 회의과정(6.9)에서 국무총리후보자가 검증이 필요한 자료 19건 중 일부내역이 포함된 자료 제출

4. 인사청문회 일부 비공개 진행

○ 정보위원회(2015. 3. 16.)

- 국가정보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원칙적으로 공개 실시하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2015.3.6.)

○ 국방위원회(2010. 12. 3.)

- 국무위원(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원칙적으로 공개 실시하되 군사작전과 관련된 기밀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2010.11.30.)

5.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국회의원 출석

○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2015. 2. 11.)

- 인사청문특위에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6. 공직후보자 위증 고발

○ 대법관 후보자 위증사유로 고발

-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 채택(2009.2.11.) 후, 동 공직 후보자에 대해 재적위원 1/3연서에 의하여 위증 사유로 고발함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⁷⁾

○ 처분결과: 각하

위 건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고발은, 「증감법」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것으로, 공직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시 처벌받는다라는 취지의 선서도 하지 않고, 증감법상 위증죄 적용대상인 증인 또는 감정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음

(인사청문편람, p.200.)

7)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7. 인사청문회 미실시, 경과보고서 미채택 임명사례

- 2008년 3월 국정원장
- 2008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008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008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8. 기타: 공직후보자 VS 증인

<증인선서와 공직후보자선서>

증인 선서 (「증감법」)	공직후보자 선서 (「인청법」)
제8조 (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함	제7조 (위원의 질의등) ②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함
①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함	(<u>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맹서는 없음</u>)
제14조 (위증등의 죄) ①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허위 진술에 따른 처벌 규정 없음</u>)

2021년도 한글속기학술연구 자료집

국회 회의록 특이사례 연구

이미정 전 대한속기협회 사업이사

국회 회의록 특이사례 연구

목 차

<본회의>

- I. 본회의 무제한 토론 사례 1
- II. 회의중지 선포없이 장시간 대기 사례 9

<상임위원회>

- III. 의안 제출 후 소관 위원회가 분리된 경우 11

<특별위원회>

- IV. 소위원회 명칭 소급 변경 사례 13
- V. 1일 1차 회의 15

<국정감사>

- VI. 발언자 표기 특이사례 19
(증인이 아닌 통역에게 질문 시 통역자의 발언자 표기)
- VII. 기관증인/일반증인 동시 채택 23
- VIII. 비공개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상정한 사례 25
- IX. 신상발언을 회의록 끝에 게재한 사례 27
- X. 음향시스템 장애로 인한 마이크 중단 사례 29

1. 본회의 무제한 토론 사례

1.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항~제10항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를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2. 국회의의록 작성 편람 (이하 편람)

편람 p34

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 경우의 표기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토론할 수 있다(국106조의2①).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하므로 (국106조의2④) 회의록 일시 아래 별란에 “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 토론 실시로 0월0일 개의하여 0월0일 산회하였음] ”이라 표기한다.
- 상정된 안건란에 기재하는“- 무제한 토론 의원”표기와“○○○ 의원”표기는 하위안건과 구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정된 안건명에서 들여쓰기를 하되 색인 편의를 위하여 각 의원명에는 연수를 기재한다. (연수표기의 예외)

편람 p143~144

(3) 24시 이후 회의를 계속할 경우

1) 본회의 및 위원회

- 국회 회의는 1일 1차 주의(국74②)이므로 24시가 되어도 회의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영(零)시 이후에 차수를 변경하여 개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무제한 토론(국106의2)의 경우 월일을 명기하여 “(0월0일 24시 경과)”로 표기한다.

편람 p148

(5) 회의중지나 산회 선포 없이 24시 경과한 경우

- 회의 진행 중 회의중지 또는 산회 선포 없이 24시가 경과되어 사실상 산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이라고 표기한다.

<선포 행위의 유무에 따른 표기방식의 구분>

개의, 회의중지, 계속개의, 산회 등이 선포된 경우는“(00시00분 개의)”와 같이 명사형으로 표기하나, 유회 또는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된 경우 등 선포행위가 없을 때에는 “(계속개의되지 않았음),”(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과 같이 서술형으로 표기한다.

3. 회의록 사례

본회의	회의기간	안건	비고
340-7 (19대)	2016.2.23~3.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1696쪽
372-1 (20대)	2019.12.23~1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57쪽
373-1 (20대)	2019.12.27~1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50쪽

4. 회의록

◇ 340회 제7차 본회의(2016.2.23.~2016.3.2.)

제340회-제7차 1	
제340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2016년2월23일(화) 오후 6시	
[무제한 토론 실시로 2월23일 개의하여 3월2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p>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강석훈·김도읍·김용남·김정훈·김종태·문정림·박대동·박민식·박성호·서상기·신동우·신의진·심윤조·원유철·이명수·이상일·이재영·이종배·조원진·홍철호·황영철·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p> <p style="text-align: right;">(18시57분)</p> <p>○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합니다. (중간 생략)</p>
--

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월23일 24시 경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장 정의화 이종걸 의원님 좀 쟁겨 주시지요. 다른 분이 해 드리지요, 피곤한데.

잘 좀 쉬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법사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장 투표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략)

○의장 정의화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1686 제340회 - 제7차

(찬반 의원 성명은 붙에 실음)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심의할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자정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좌수 변경을 위해서 오는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좌식에, 의석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3월2일 23시5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종걸 의원 의 106인 말의)

투표 의원(263인)

찬성 의원(107인)

권 경 우	김 광 람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안	김 명 면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준	김 성 관	김 성 태	김 새 면
김 영 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순 봉
김 광 실	김 재 경	김 재 권	김 정 복
김 정 준	김 재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훈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희 신
김 희 국	김 희 장	나 경 원	나 성 린
노 현 태	류 성 건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임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등
박 대 승	박 덕 용	박 맹 우	박 명 세
박 민 식	박 성 호	박 윤 욱	박 인 속
박 창 식	배 디 광	서 상 기	서 용 교
서 경 원	손 인 훈	송 영 근	신 정 람

◇ 제372회 제1차 본회의(2019.12.23. ~ 12.25.)

제372회-제1차

제372회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2019년 12월 23일(월) 오후 7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12월23일 개최하여 12월25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경정의 건

(하락)

삼정본 안건

1.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경정의 건(의장 제의).....3
(중략)
- 의사일정 변경중의의 건(윤후덕 의원 외 155인 서건동의).....16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한경배·이용주·김관영·김동철·권성식·장병완·김종민·기동민·이철희·원혜영·김상희·박병석·박왕주·최인호·홍영표 의원 발의).....17
- 무제한토론 의원
· 주 호 영 의원.....18

(하락)

(19시57분 개회)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중략)

의사일정 변경 중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

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
표발의)(심상정·윤소하·한경배·이용주·
김관영·김동철·김성식·장병완·김종민·
기동민·이철희·원혜영·김상희·박병석·
박왕주·최인호·홍영표 의원 발의)

(21시11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 1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제안설명
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냅니다)

(「문화상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임마!」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뭐가 이게 단말
기의 대체 자료예요, 거금!)

(○이주영 의원 단상에서 — 제안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아, 문화상!」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
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
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중략)

(12월23일 24시 정회)

(중략)

○의장 문희상 김태홍 의원님, 김태홍 의원님!
토론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김태홍 의원 일 항부로 하지 마!

○의장 문희상 의원 여러분, 자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25일 24시 회기 종료로 자동 산회되었음)

(12월25일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

제373회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2019년 12월 27일(금) 오후 3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12월27일 개회하여 12월28일 심회하였음]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허락)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권경배·이용주·김관영·김동철·김성식·장병환·김종민·기동민·이철희·원희영·김상희·박병석·박완주·최인호·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3
2.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인)(법제사법위원장 제출) 5
(승락)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병계·송기현·이종걸·표창원·박주민·이상민·채이배·안호영·김종민·임제훈·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17
- 무제한토론 의원
· 김재경 의원 18

(허락)

(17시40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하지 마세요. 이게 됩니까?)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이 실음)

다만 12월 27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권경배·이용주·김관영·김동철·김성식·장병환·김종민·기동민·이철희·원희영·김상희·박병석·박

완주·최인호·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중략)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두제한토론 중에라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병계·송기현·이종걸·표창원·박주민·이상민·채이배·안호영·김종민·임제훈·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21시25분)

○의장 문희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12월27일 24시 경과)

(중략)

○부의장 주승용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방해했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야당을 위한 건데 왜 여당이 끼어들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산회 선포도 못 합니다.

○강효상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주승용 그러니까 자동으로……

(「헛킨 시간 좀 짧시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28일 24시 회기 종료로 자동 산회되었음)

※ 무제한토론 시 회기종료로 자동 산회되었을 경우 표기

24시 경과로 인한 자동 산회는 국회선례에 의해 형성된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준용하기 위해서 자정이 넘을 경우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제한토론의 경우 회기가 종료되어 자동 산회를 한 경우에는 달리 표기한다.

II. 회의중지 선포 없이 장시간 대기 사례

1. 편람

편람 p128~p129

(4) 기타 상황표기

- 회의 중에 행한 발언 내용만으로는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회의장의 분위기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그 상황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 발언자 표기에 이어 상황표기가 될 때에는 상황표기 이후에 줄을 바꾸어 발언 내용을 표기한다.
- 기타 상황표기는 '시간표기' '투표상황표기' 등과 달리 회의록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발언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회의록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보충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상황과 표기 요건을 모두 예시할 수 없으므로 회의 관례상 유형화된 표기 형식을 응용하되 객관적인 묘사가 되도록 한다.

2. 개요

2019년 8월 2일 본회의 개의 중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치기를 기다리면서 주승용 부의장이 의원들에게 본회의 대기를 요청하여 2시간가량 대기 후 문희상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였음.



(참고 : 방송과에서 송출된 영상화면)

3. 회의록 표기

◇ 제370회 제1차 본회의 (2019. 8. 2.)

○부의장 주승용 …(중략)… 정회는 하지 않고, 앞으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이해하셔서 멀리 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시48분)

(20시41분)

○의장 문희상 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III. 의안 제출 후 소관 위원회가 분리된 경우

1. 개요

2017년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2018년 7월 소관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대안을 제출한 소관 위원회 표기에 혼란이 있음.

2. 연혁

※2024064(의안번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12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사위 회부
- 2018년 2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 2018년 7월 16일 3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 2019년 11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의결
- 2020년 1월 9일 본회의 의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7. 12. 1 제안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9. 11.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년 2월 28일, 2017년 7월 10일 김정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3. 회의록

◇제371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9.11.20.)

제37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9년11월20일) 1

제371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11월20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략)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2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 2
(중략)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계속) 58
2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59
2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0

※의안정보시스템 부가정보 비고란에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시행)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되어 동 법률의 소관위원회가 변경되었음” 이라고 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IV. 소위원회 명칭 사후 변경

1. 개요

2019년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 심사가 369회~370회까지 계속되었는데 제369회와 제370회 소위원회 명칭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 행정실(8. 1)에서 사후에 명칭 변경을 요청하여 소급하여 명칭을 통일시켰음.

2. 문제 인식

- 회의록시스템에서 A소위원회 1차 등록 -> B소위원회로 변경 등록하게 되면 A와 B를 상이한 2개 위원회로 인식
- 국감 회의록에서 피감기관 순서가 바뀌면 전자탐에 통보 공지해야 하는 이유가 표지의 피감기관 순서가 바뀌면 다른 회의로 인식하기 때문.

3. 회의예정표

◇369-1(2019.7.17) 예결위 추경소위 회의예정표

제369회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예정(안) 보고	
수 신 : 차무총장	회의 일시 : 2019. 07. 17. (수) 10:30
회의장소 : 예결위 소회의실 (638호실)	수석전문위원 : 김 광 복 김 광 목 ²⁾
안 건	비 고
1. [201999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부)	

◇370-1(2019.7.31) 예결위 추경소위 회의예정표

제370회국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예정(안) 보고	
수 신 : 차무총장	회의 일시 : 2019. 07. 31. (수) 10:00
회의장소 : 예결위 소회의실 (638호실)	수석전문위원 : 김 광 복 김 광 목 ²⁾
안 건	비 고
1. [201999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부)	

4. 회의록

◇ 제369회 제1차(2019.7.31.) 예결위 추경소위

제370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19년7월31일) 1

제370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국회사무처

일시 2019년7월31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중략)

◇ 국회회의록시스템

국회분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공청회	청문회	연석회의	
제376회(2020.02.17.-2020.03.17.)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차(2020년03월17일)					요약정보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차(2020년03월13일)					요약정보
제371회(2019.09.02.-2019.12.10.) (정기회)					
제370회(2019.07.29.-2019.08.27.)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2차(2019년08월02일)					요약정보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1차(2019년07월31일)					요약정보
제369회(2019.06.20.-2019.07.19.)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3차(2019년07월19일)					요약정보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2차(2019년07월18일)					요약정보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1차(2019년07월17일)					요약정보

V. 1일 1차 회의

1. 관련 국회법 및 편람

국회법 74조제2항

제74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람 p7

3. 회의록의 작성

- 국회법에 회의록은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속기사들이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 후 표지 및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출석의원 명단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어문규범과 회의록체제에 맞게회의록을 작성한다.
- 본회의전원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다음 날 임시회의록을 발간하므로 우선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 본회의회의록위원회회의록 등은 1일 1차 회의록 형태로 작성하며, 국정감사회의록은 피감사기관별일자별로 작성한다.

2.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26일 새벽 2시40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상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됐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와 ‘원천무효’를 외치는 등 강력 반발했다.



- 4월26일 02시42분 개의 - 03시22분 회의중지(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무효
- 4월26일 21시17분 개의 - 22시13분 산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사보임 오신환 위원 → 채이배 위원(4.25)
 ⇒ 발언자 위치 표기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3. 회의록

◇무효화된 속기록

제368회-사법개혁특별(2019년4월26일) 1	
제368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19년4월26일(목)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p>(02시42분 개의)</p> <p>○위원장 이상민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거하고자 합니다.</p> <p>제368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의하였습니다.</p> <p>당초 분청 230호를 회의장소로 공지를 했으나 다만 자유한국당의 불명 정거로 회의 자제를 열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중대한 회의진행에 결할 상태가 발생해서 무득이 이곳 임시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소를 변경해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p> <p>이와 같은 불명적인 회의장소, 국회 운영의 심대한 침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과를 지워 고하를 막론하고 물을 것이더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p> <p>(중략)</p> <p>○위원장 이상민 3개의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 3개의 법률안은 오늘 적법하게 접수되었고 앞으로의 진행은 이를 전제로, 이것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을 전제로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p> <p>이 절차는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신속처리 안전절차를 밟아야 하나 무기명투표에 관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잠시 회의를 유회했다가 준비가 되는 즉시 속개하고자 합니다.</p>	<p>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p>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p> <p>그러면 무기명투표에 관한 준비를 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준비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p> <p>정회를 선포합니다.</p> <p>(03시22분 회의중지)</p> <p>(지속개회되지 않았음)</p>

제368회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임시회)

국회사무처

일 지 2019년4월26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속처리안건 지정통칙의 건

상정된 안건

1. 신속처리안건 지정통칙의 건(비회원 위원 등 11인 제출).....3

(표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비속을 경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가 원천무효입니다. 국회법 49조 6항에 따라 가지고 사·보임 처리가 원천무효입니다. 위원회 사·보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보임이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장내 소란)

○위원장 이상민 생일이 되었기 때문에 제368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두 번째는 사건에 회의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법 49조에 따라 가지고 이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박혜련 위원 (의원장석 앞에서)

앉아서 발언하세요, 발언할 기회 드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앉으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가 원천무효인데 앉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국회법 49조에 따라 가지고, 강사에게도 사전 협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들에게 아무런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의원장석 앞에서)

이 회의는 새로 진행되는 회의예요.

○위원장 이상민 앉으세요,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까 제가 회의에 오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오늘 새벽에 고지했습니까? 공지했습니까?

○박혜련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 회의가 아니니까 일단서 어기하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제 추가잖아요. 첫 회의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제가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49조 6항에 따라 가지고 비준이내장 국회의원 두 사람의 사·보임은 위법한 사·보임입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시각특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여기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비준이내장 원내대표가 신청한 것이 위법이고 그것을 또 오프라하고 허가해 준 국회의장의 허가도 위법입니다.

(중략)

○위원장 이상민 예, 앉았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하세요.

오늘 당초 예정, 공지된 국회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로 인해 진행이 불가하고 이는 곧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록이 이곳 문제위원 회의 회의장은 빌려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기석의 의견인, 제988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이미 공기를 했습니다. 장소 변경은 국회법이 아니라서 당초 예정, 풍저류 장소가 회의가 불가능 또 다른 근한일 때에는 장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박상도 위원 아니, 오늘 새벽에 한 것은 시간하고 장소도 여기 한 데 놓고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윤한홍 위원 권 회의를 고쳐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사인건지 모르시 위원 사·보임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오늘 아침에 그 회의를 고쳐줄 단 한 기예요.

○위원장 이상민 4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내어서 위원님과 임재훈 위원님이 요청되었습니다.

임재훈 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인사할수하시죠.

(장내 소란)

○윤한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상도 위원 위원장님, 얘기 좀 하시지. 얘기 좀 하시지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인사말씀 들으시고 하시지요.

○박상도 위원 아니, 얘기 먼저 하시지요. 이 부 분이 대한 얘기 아닙니까?

○심태욱 위원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그렇게 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한홍 위원 제가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회의 진행은 제가 할 겁니다. 좀 거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앉았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이 회의의 결실무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내가 좀 이따 기회를 드릴 겁니다.....

○백혜련 위원 아니, 윤 위원님, 발언권을 하러

신 주셨습니까 나중에 발언권을 열고 얘기하세요.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회의의 근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기예요, 회의의 근본을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을 열고 이야기 하시라고요.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안 주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임재훈 위원님 인사말씀 먼저 놓고 발언권 열고 하세요.

(중략)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거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백혜련 위원님, 하세요.

○백혜련 위원 정말로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이제 국회의록을 준수해서 위원장님의 회의권형권을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불법 사·보임과 관련하여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저게도 똑같은 일을 저지했습니다. 당연히 상징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이상민 백혜련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사. 말씀 계속하시지요.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백혜련 위원 추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지금 이 자리는 지켜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저 안 됩니까, 불법으로 사·보임을 했는데? 불법으로 사·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 두요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사법개혁특별 위원들이 있는 자리이고 이미 사·보임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략)

○위원장 이상민 윤 간사님의 사과를 촉구하고, 다시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대 범죄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다시 한번 결고합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

(22시13분 산회)

VI. 발언자 표기 특이사례

1. 편람

편람 p108

5)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발언

- 위원회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비록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정식 발언자 표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청석에서 — …….)”“(○○○ □ 발언대에서 —…….)”등과 같이 표기하며 출석명단에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언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방청석에서 — 「……」 하는 이 있음)”으로 표기한다.

편람 p113

(6) 국정감사·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발언자 표기는 위원회 표기방식을 준용한다. 피감사기관 참석자는 직함·성명으로 표기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은“○증인 ○○○○”“○감정인 ○○○○”“○참고인 ○○○○”으로 표기한다.
- 증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발언한 경우에는 “○증인(□□□)대리 ○○○○” “○증인(□□□)번호인 ○○○○”로 표기한다. 대리인만 출석하거나 증인과 같이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편람 p135

- 위원회에서는 허가받은 발언이든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이든 지정된 의석이 아니거나 발언대가 아닌 곳에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발언자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그 위치를 표기한다.
- 다만 당해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석발언 표기 형식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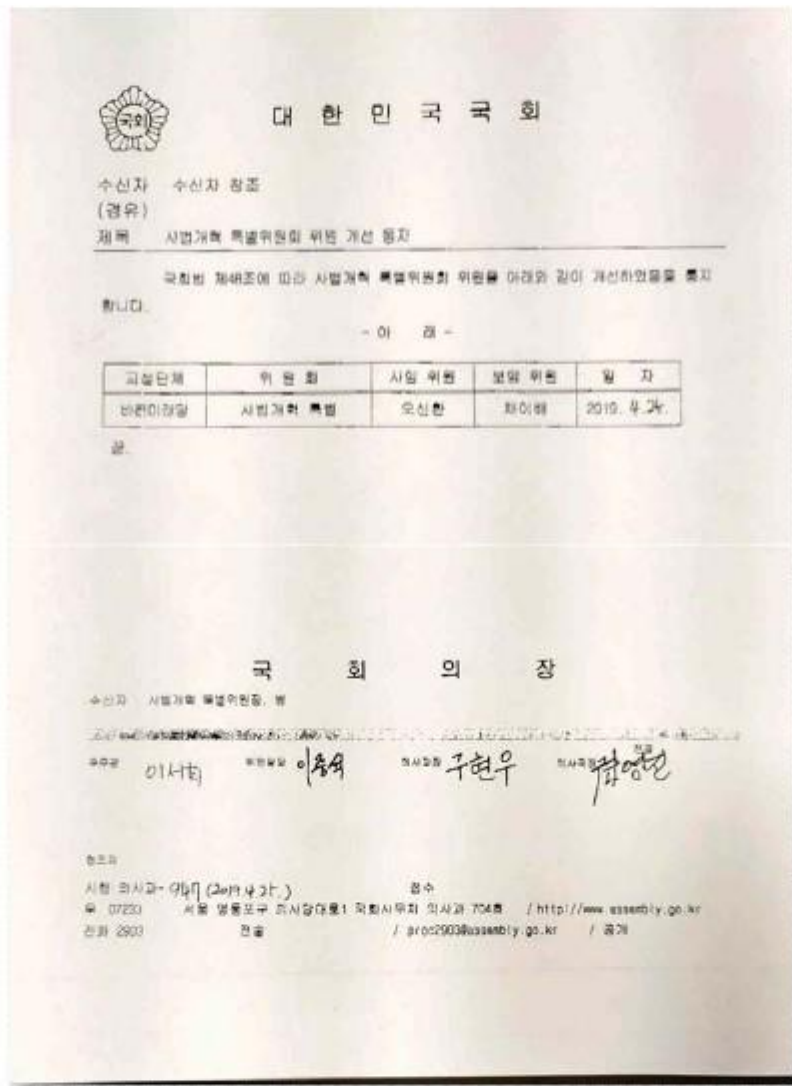
2. 회의록 사례

회의명	회차	회의일자	내용
사법개혁특별위원회	368-10	2019.4.26.	사보임원 의원이 위원석에서 발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9.10.4.	위원이 통역자에게 직접 질문

2-1. 제368회 제10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9. 4. 26.)

1) 개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위원에서 채이배 위원으로 위원 개선이 있었으나 이에 불복, 오신환 의원이 위원석에 앉아 발언하였음.



2) 회의록

제368회-사법개혁특별제10차(2019년4월26일)

제368회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임시회)

국회사무처

일 시 2019년4월26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백혜련 위원 등 11인 제출) 3

(21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가 원천무효입니다. 국회법 48조 6항에 따라 가지고 사·보임 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위법한 사·보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보임이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장내 소란)

(중략)

○위원장 이상민 4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채이배 위원님과 임재훈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임재훈 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인사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중략)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백혜련 위원님, 하세요.

○백혜련 위원 정말로 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이제 국회법을 준수해서 위원장님의 회의진행권을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불법 사·보임과 관련해서 저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어제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안전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이상민 백혜련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자, 말씀 계속하십시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백혜련 위원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지금 이 자리는 계셔서 안 되는 자리입니다.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왜 안 됩니까, 불법으로 사·보임을 했는데? 불법으로 사·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략)

2-2.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 (2019. 10. 4.)

1) 개요

2019년 10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훈 위원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증인 신청한 훗타 나오히로의 통역자로 나온 아사히글라스 직원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발언자 표기 문제가 제기되었음.

2) 회의록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2019.10.4.)

○설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훗타 나오히로 증인은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통역자가 나와 있는데 통역자가 동시통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통역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질문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통역을 거쳐서 하면 저는 사실 3분밖에 얘기 못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해를 시키고 바로바로 답변을 들어야 빨리 질의를,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 경제상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시통역이 가능합니까?

○AGC화인테크노코리아주총무인사팀 김명희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 통역인은 아니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통역을 대행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시통역으로 할 경우 오역 등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설훈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사전에 이것 질문할 내용 요지를 썼지요? 받았지요?

○AGC화인테크노코리아주총무인사팀 김명희 예, 방금 받았습니다.

※발언자 표기 예시

○AGC화인테크노코리아주총무인사팀 김명희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 통역인은 아니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통역을 대행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시통역으로 할 경우 오역 등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순차통역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AGC화인테크노코리아주총무인사팀 김명희 발언대에서 —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 통역인은 아니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통역을 대행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시통역으로 할 경우 오역 등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순차통역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Ⅶ. 기관증인을 일반증인으로 동시 채택한 사례

1. 개요

제364회 제3차(18.10.18) 행안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사장을, 기관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서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으로 모두 넣어 준 사례가 있음(선서는 기관증인 선서만 했음).

⇒ 364-3 행안위(2018.10.11.)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

⇒ 위원회의 업무 착오인 것으로 사료됨.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로 국감 대상 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듯)

2. 회의록

◇ 제36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18. 10. 11.)

○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출석요구 하는 일반증인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5명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유민봉	10.18.(목) 서울특별시
최준성	대한송유관공 사사장	권미혁	10.19.(목) 경기도

2018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

일시 2018년10월18일(목)
장소 서울특별시청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인재근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중략)

다음은 오늘 중인 신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유인물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서울특별시 감사에는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화와 정원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중요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한 장면에 대한 신문은 오늘 기사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편의 시간이 정량하여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명의 최고인은 불살살 의사를 밝혀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기원중인 편지 및 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신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략)

○서울특별시상 박원순 “정서, 문헌은 국회의원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할 때 있어서는 국회의석의 증언·간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이 따라 순김과 보편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민일 진술이나 시면달면여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석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시	장
(중략)	(중략)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중략)	(중략)

○위원장 인재근 (중략)

○서울특별시상 박원순 (중략)

이어서 시 상하 교통공사 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김사용 서울유력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치훈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물공시 사장입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상하기관장 인사)
(중략)

○김함정 위원 제기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을 하고 있고 지하철 운행은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가지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중략)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울특별시		
시	장	박 원 순
(중략)		(중략)
서울교통공사사장		김 태 호
(중략)		(중략)

○춘석 증인

김태호(서울교통공사 사장)

VIII 비공개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공개회의록 표지에 반영한 사례

1. 개요

제370회 국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2019.8.28.)에서 공개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상정하지 않고 비공개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상정하였음.

☞ 비공개회의 종료 선포 없이 비공개회의에서 산회한 경우 산회(공개회의록) 표기에 다수

편람 p.157~p.160

5. 비공개회의 표기

-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은 공개회의 부분과 비공개회의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이와 같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비공개회의록이라 한다.
- 비공개회의록 표지의 의사일정란에는 공개회의록의 전체 의사일정을 기재한다.
- 상정된 안건란에는 비공개회의에서 실제로 상정심사한 안건을 기재한다.
- 공개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을 비공개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고 논의한 경우 비공개회의 부분에도 안건 상정 표기를 한다.
- 비공개회의록 표지의 의사일정란에는 공개회의록의 전체 의사일정을 기재한다.

◇ 제370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2019.8.28.) 회의록

제370회-정치개혁특별(안전조정)제2차(2019년8월28일)

제370회국회 (일시회·개회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전조정위원회)

국회사무처

일 시 2019년8월28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우형 의원 대표발의)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성 의원 대표발의)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진 의원 대표발의)

(10시11분 개회)

○조정위원장 김종민 의석은 정중히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략)

(○)조정위원장 김종민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전체적인 회의는 일단 미루고요 하고 회의 순서 공개회의 시간과 꼭 강조하거나 전달할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회의를 일단 미루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조정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3분 비공개회의종료)

○조정위원장 김종민 오늘 실시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거신하신 의견들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받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종식 김재원 김종민 이철희
상처원 최인호

○출석 전문위원

전 군 위 원 정 불 호

○동양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구 차 장 김 세 훈
영 세 국 장 김 문 비

IX. 신상발언을 회의록 끝에 게재한 사례

1. 개요

2016년 10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오후 피감기관을 달리하여 진행되었는데,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위원이 한 발언과 관련하여 오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사과 발언을 함에 따라 오전 감사회의록 끝에 신상발언 형식으로 게재함.

2. 회의록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2016. 10. 5.)



2016년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시기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 시 2016년10월5일(수)
장 소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회의실

(16시47분 감사개시)

○위원장 柳在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중략)

○장정숙 위원 위원장님, 결의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柳在伸 예,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 조금 전 제가 경기도청 국감장에 서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22명 위원님들께 경기도청 팀장 22명이 퇴직 마크했다는 것을 결의하던 중에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을 담당한, 오수관리팀장이 달은 것을 두고 ‘오수나?’라고 조크하신 것을 본 위원이 그 결의 도중에 기분이 업되다 보니까 ‘채수 없게’, 사실과는 다른 ‘채수 없게’라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쓴 점에 대해서 상처 입으셨을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청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伸 속기가 삭제가 되나, 그게 되나? 안 될 텐데……

그것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기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삭제는 안 되니까……

○장정숙 위원 완전한 삭제는 안 되더라도……

○위원장 柳在伸 그 취지와 다르다, 위원님 잘못 발언된 것이다……

○장정숙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한 것을 속기록에 첨부해 주시도록……

○위원장 柳在伸 그렇게 잘못된 발언이다, 내 취지와 다르게 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속기는 삭제가 되지 않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X. 음향시스템 장애로 인한 마이크 중단 사례

편람 p167~p170

다. 발언시간을 초과한 발언의 기재

- 의원의 발언시간은 국회법 제10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자가 제한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타이머 장치에 의하여 마이크가 꺼지게 된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발언한 부분도 이를 기재(규정4③)하되 허가받은 발언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마이크 중단 표기'를 한다.
- 마이크 중단 표기 방법은, 의원의 발언 중 마이크가 중단된 부분에 말줄임표(……)를 붙이고 줄을 바꾸어“(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라 표기한 후 점선을 굵고“(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라 표기한 후 줄을 바꾸어 마이크 중단 상태에서의 발언을 기재하되, 사회자의 발언이나 정부 측의 답변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재한 후 점선을 그어 마무리한다.
- ☞ 마이크 중단 전후의 발언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마이크 중단 이후에 한 발언이지만 시간 추가요청 발언이나 내용을 압축정리하는 등의 간단한 발언인 경우에는 마이크 중단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사회자의 묵시적 연장 허가로 마이크가 다시 작동되거나 중단 전후의 문맥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상황요사 형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라 표기할 수 있다.

1. 문제 제기 및 결론

발언시간 초과가 아닌 음향시스템이나 방송설비 고장으로 인해 마이크가 중단되었을 경우 회의록상의 발언으로 내용이 유추 가능하므로 상황 표기 불필요함.

2. 회의록 예시

◇ 제322회 제7차 본회의 (14. 2. 12.)

<p>김찰은 2월 3일 구형 의견서에서 RO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시스템 고장으로 마이크 중단)</p> <p>.....</p> <p>(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O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는……</p> <p>○의장직무대리 이병석 마이크 오류 점검을 좀 할게요. ○김미희 의원 제 소리 들립니까? (「마이크 지금 안 나와요」 하는 의원 있음) 제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시간 멈춰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p>	<p>김찰은 2월 3일 구형 의견서에서 RO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RO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는……</p> <p>○의장직무대리 이병석 마이크 오류 점검을 좀 할게요. 김미희 의원님! ○김미희 의원 제 소리 들립니까? (「마이크 지금 안 나와요」 하는 의원 있음) 제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석 시간 멈춰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p>
--	--

◇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19. 10. 4.)

<p>○참고인 박정훈 고용노동부는 초반에 세종본청과 안산지청에서 한 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향시스템 장애로 마이크 중단)</p> <p>.....</p> <p>(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초반에 임시건강진단이나 안전보건진단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제 마이크가 안 나와요, 1분 30초 남았을 때부터 안 나왔거든요, (중략)</p> <p>.....</p> <p>○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요 고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p>	<p>○참고인 박정훈 고용노동부는 초반에 세종본청과 안산지청에서 한 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초반에 임시건강진단이나 안전보건진단을 하지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제 마이크가 안 나와요, 1분 30초 남았을 때부터 안 나왔거든요, (중략)</p> <p>○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음향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요 고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p>
--	--

◇ 제371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5)

<p>○박지원 위원 …(중략)…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송장비 고장으로 마이크 중단)</p> <p>.....</p> <p>(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부처 아니에요? 어떤 기관을 편취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청도 자체 예산권이 있어요, 훨씬 큰 검찰청…… (「마이크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 있음) → (「마이크가 다 꺼졌네」 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꺼졌어요? 그냥 합시다, 내 음성이 굉장히 좋고 커요, 이것은 시간 계산도 안 되니까…… ...(중략)...</p> <p>○박지원 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당시 국토부에서 증제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그래서……</p> <p>.....</p> <p>○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서둘러요,</p>	<p>○박지원 위원 …(중략)…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아니에요? 어떤 기관을 편취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청도 자체 예산권이 있어요, 훨씬 큰 검찰청…… (「마이크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가 다 꺼졌네」 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꺼졌어요? 그냥 합시다, 내 음성이 굉장히 좋고 커요, 이것은 시간 계산도 안 되니까…… ...(중략)...</p> <p>○박지원 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오수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당시 국토부에서 증제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그래서……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서둘러요,</p>
--	---

2021년도 한글속기학술연구 자료집

일본 중의원 기록부
연구보고서

이서진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기자

일본 중의원 기록부
연구보고서

목 차

I. 기록부의 개요

1. 기록부의 조직 및 인적 구성 3
2.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의 구성 및 업무 7
3. 신회의록시스템(음성인식시스템) 10
4. 기록부 관련 기타사항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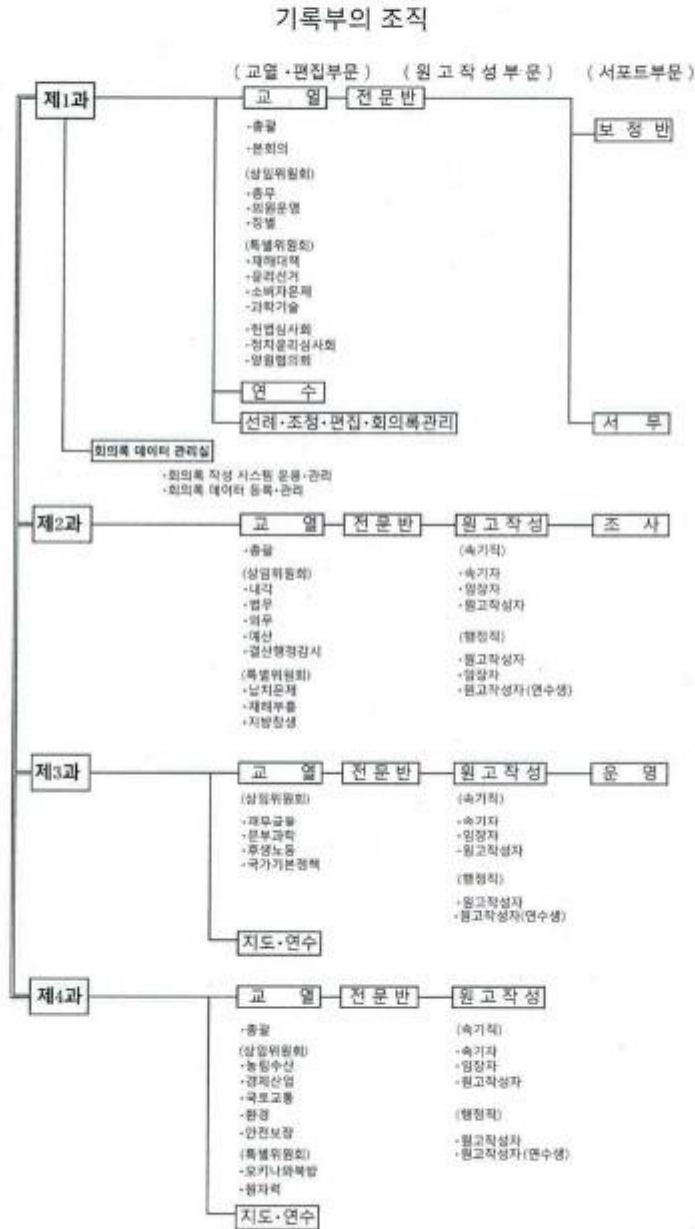
II. 참고자료

1. 신회의록시스템(음성인식시스템)의 만족도 조사 결과 15
 2. 기타용어 해설 17
-

I 기록부의 개요

1. 기록부의 조직 및 인적 구성

(1) 조직도



- 원고작성자가 배치되는 과는 2~4과임.
- 교열(校閱) : 원고작성자가 제출한 원고를 다시 정사하여 편집함. 실제 회의 부분의 원고에 더해 회의출석자의 정보 및 법안 등의 첨부자료 등 인쇄된 회의록에 필요한 자료 모두를 모아 인쇄에 필요한 처리 등을 행함. 또한 디지털 데이터 편집의 지시, 홈페이지 공개 등을 지시함.
- 전문반(專門班) : 음성인식시스템의 설비가 없는 곳에서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함. 소위 말하는 베테랑 속기사가 속해 있음.
- 보정반(補整班) : 오타자 검토·수정, 인터넷상의 데이터 관리·보정, 형식적인 통일성 등을 검토하고 보정하는 업무를 담당함.
- 조사(調査) : 회의자료 요청, 불분명한 발언이나 내용을 발언자에게 질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운영(運營) : 회의 예정을 바탕으로 각 회의에 인적 배치를 하거나 녹음 등의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함.
- 입장자(臨場者) : 직접 회의장에 들어가서 음성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발언자 체크, 사회교대, 특정 동작 등)를 현장에서 취득함. 보통 30분 교대로 이루어지며 IC레코더의 녹음 작업도 겸함. 장내 소란, 마이크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현장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일반직 직원이 아닌 속기사가 들어감.

(2) 인적구성

조직 및 인적 구성

		【담 당 사 무】	【인 원】	
기록부장			서 무	4 인
총무주관				
제 1 과장	본회의	속기 및 회의록의 편집	전문반	4 인
	총무위원회		편 집	6 인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특별위원회 (4)			
	헌법심사회		교 열	8 인
	정치윤리심사회			
	양원협의회			
	언수 및 속기 연구			
회의록데이터	회의록데이터화 및 데이터 관리 운영	실 원	6 인	
관리실장	속기에 필요한 녹음	보정반	6 인	
제 2 과장	내각위원회		원고작성자	19 인
	법무위원회			

	외무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의 편집	전문반	2인		
	예산위원회		교 열	9인		
	경상행정감시위원회		조 사	6인		
	특별위원회 (3)					
제 3 과장	재무금융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의 편집	원고작성자	28인		
	문부과학위원회				전문반	2인
	후생노동위원회				교 열*	8인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운 영	3인
제 4 과장	농림수산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의 편집	속기자	28인		
	경제산업위원회				전문반	1인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교 열*	12인			
		안전보장위원회				
	특별위원회 (2)					

(주) *는 재임용자 5인을 포함함.

2.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의 구성 및 업무

(1)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의 구성

- ① 중의원사무국 기록부 제1과에 설치
- ② 회의록데이터관리실장 아래 회의록데이터 관리실원 소속

(2)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의 업무

- 1) 시스템(음성인식시스템 포함) 운영·관리
 - ① 회의록시스템의 운영·관리, 보수업자 대응
 - ② 회의록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작성
 - ③ 의사속기(미정고)시스템의 개발·운용·관리
 - ④ 의사속기(미정고)시스템의 이용 순서 작성

- 2) 시스템 기획 입안·조정
 - ① 회의록시스템 개수(改修)의 기획 입안
 - ② 신규 시스템 개발의 기획 입안
 - ③ 시스템 신규 개발, 개수에 따른 타 부서와의 조정

- 3) 각종 기기 관리
 - ① 기록부가 보유한 각종 기기류의 운용·관리
 - ② 기록부원이 사용한 중의원사무국 직원용 단말기, 프린터의 이용 수속, 관리

4) 연수업무

- ① 회의록시스템의 이용자 연수
- ② 기록부 각종 연수(전체 연수회, 신규 배속자 연수, 계층별 연수 등)의 회의록데이터관리실 소관 사항의 보고·교육 등

5) 예산 요구

- ① 회의록시스템 관련 예산 요구를 위한 업자, 타 부서와의 연락 조정
- ② 회의록시스템 관련 예산 요구를 위한 자료 작성

6) 회의록데이터 관리

- ① 회의록 원고 보정에 관한 교열과의 연락 조정
- ② 회의록 보정업자 관리
- ③ 중의원HP, 국회 회의록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회의록 데이터 등록 등
- ④ 속보판 발행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연락 조정
- ⑤ 속보판 도면 작성·배부 등

7) 국회 회의록 풀텍스트·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추진 협의회 관계

- ① 중의원, 참의원, 국회도서관에서 구성한 협의회의 중의원 측 사무국 업무
- ② 추진 협의회 간사회, 사무국 회의 출석

8) 그 외

- ① 원내, 원외(국내, 국외)로부터의 회의록시스템에 관한 질문 등에 대응
- ② 원내, 원외로부터의 회의록시스템 견학 요청 등의 대응

③ 중의원·참의원의 예산분과회, 결산분과회에 대응 (기록부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답변자료 작성 등)

☞ **회의록시스템이란?**

회의록시스템이란 회의록 작성 시스템, 조사 지원 시스템, 회의록 열람 시스템의 3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기록부의 업무용 시스템의 총칭이다.

- 회의록 작성 시스템 : 회의록 음성·영상의 채록, 음성 인식에 의한 문자화, 텍스트 데이터 편집 등의 일련의 작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록부 직원이 회의록 원고를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
- 조사 지원 시스템 : 원고 작성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신문 정보 및 전문 용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회의록 열람 시스템 : 본원 인트라넷을 통해 확정고가 된 회의록을 중의원 의원, 비서 및 직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 **의사속보(미정고)시스템이란?**

의사속보(미정고)시스템이란 본원 인트라넷을 통해 회의록 작성 시스템에서 작성한 의사속보(미정고)를 중의원 의원, 비서 및 직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의사속보(미정고)는 회의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회의의 발언 부분만을 정리하여 공개한다.

3. 신회의록시스템(음성인식시스템)

(1) 하야테 [速手(はや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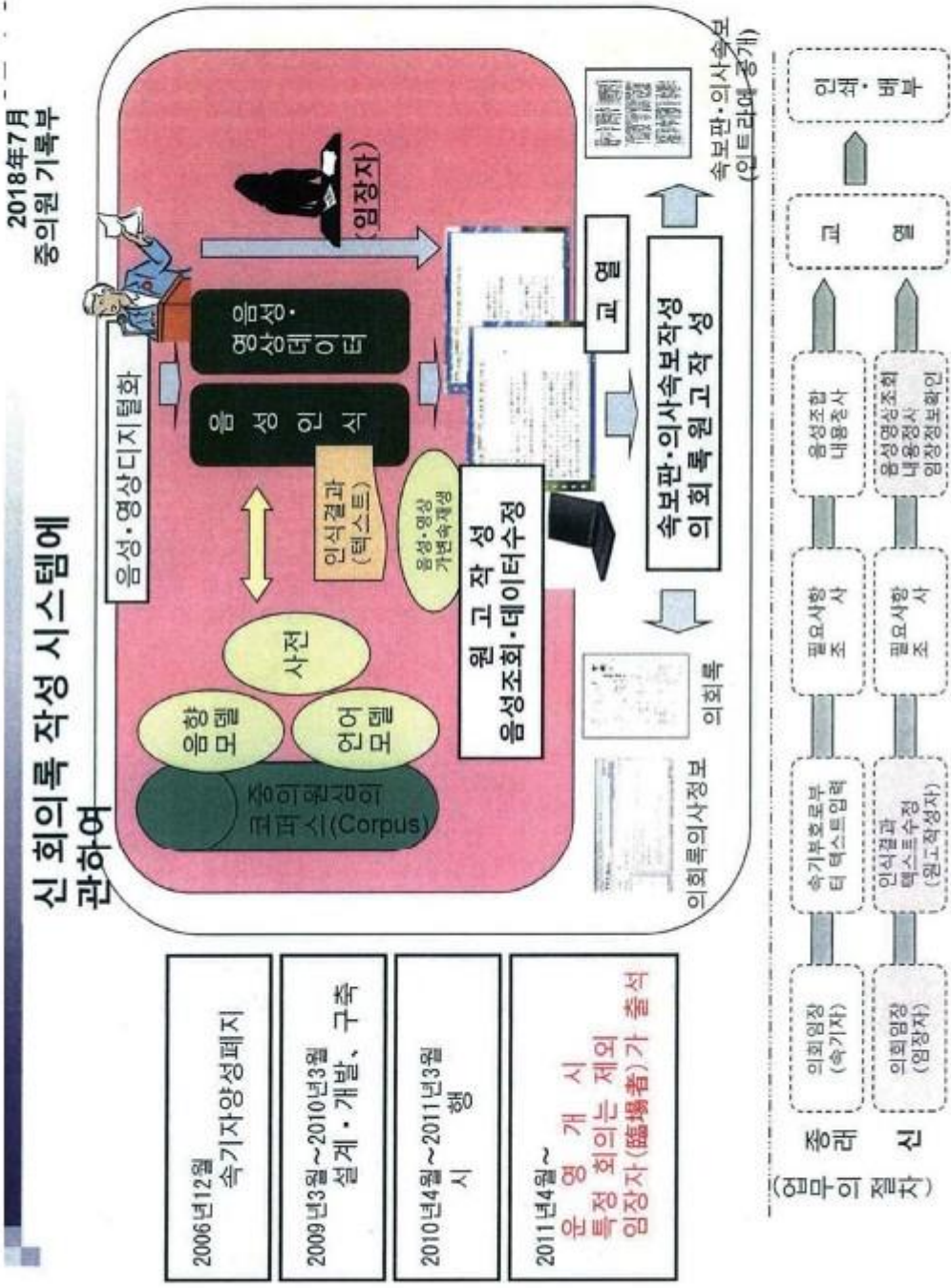
- 음성인식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하야테 [速手(はやて)] 로 화자를 특정하지 않으며 중복된 발언은 인식되지 않음. 음성 과 링크된 형태로 텍스트 데이터가 출력되어 번역(反譯)원고 의 토대가 됨. (현재는 음성뿐만 아니라 일부 영상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중이라고 함)
- 원고작성자는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하야테를 통해 개인 PC로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원고를 작성함. 각각에게 주어지는 분량은 약 5분 정도 원고임.

☞ 번역(反譯)원고란?

원고작성자가 각각 5분 분량의 발언을 문자화하여 제출하는 원고를 말한다.

(2) 신회의록시스템(음성인식시스템)의 절차

- 회의록 발행은 인쇄기간(3일 정도) 포함해 개회일로부터 7~10일 소요
 - 전자회의록 인터넷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4~6일 정도 소요
 - 회의록 정정 : 위원회는 중의원사무국 위원부의 각 위원회 담당이 접수
본회의는 중의원사무국 위원부의 의원운영 위원회 담당이 접수
- ※ 정정요구서 등 정해진 양식은 없고,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하므로 의장에 보고하지 않음



(3) 음성인식시스템 미도입 위원회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속기사가 직접 수필속기를 하고 있는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회의록이 빠르게 나와야 하는 위원회 (* 단, 이 경우 음성인식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 본회의
- 예산위원회
- 특정 이슈가 되는 법안이 있는 위원회
- 헌법위원회

2) 음성인식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

- 의원운영위원회
- 전통적인 건축물이 훼손되기 쉬운 곳에서 열리는 회의(한국 국회로 본다면 사랑채 같은 곳)

3) 비밀위원회

(4) 전자회의록시스템

- 전자회의록 서비스는 1997년부터 시작함
- PDF 형식 및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함
- 전자회의록 업로드와 시스템 관리는 기록부가 담당하고 있음

4. 기록부 관련 기타사항

(1) 속기직 + 일반직의 조직 환경

- 일본 중의원 기록부는 2006년 속기사 양성소 폐지 후 2011년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며 일반직이 기록부에 배치되게 되었음. 따라서 현재 속기사로 채용된 직원과 일반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 2010년 속기사 150여 명, 일반직 수 명에서 2019년 속기사 120여 명, 일반직 20명으로 변경됨.
- 일반직으로 채용되어 기록부에 배치된 직원은 6개월의 업무 연수를 받게 되며 그 뒤로는 OJT방식을 적용함.
- 속기사로 채용된 기록부 직원과 일반직으로 채용된 기록부 직원의 급여나 승진 등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법에 정해진 급여조건과 승진조건을 똑같이 적용받음. 단 속기사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 이미 속기부감독·속기감독의 위치에 있으므로 승진에 관련해서는 일반직과 충돌할 염려는 없음.

(2) 기록부 내 승급 체계

속기시보 → 속기주임 → 속기부감독 → 속기감독

- 속기시보로 임용된 후 1년 후 승격시험을 거쳐 정식 속기사로 인정받음
- 3년 후 주임시험을 거쳐 속기주임으로 승급

- 인사평가 및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속기부감독·속기감독으로 승급 (약 25년이 걸림)
- 속기부감독과 속기감독 모두 교열을 담당하고 있으나 큰 차이는 원고 작성 여부로서 속기부감독은 직접적인 원고 작성 업무도 겸함
- 하나의 위원회에 2명의 속기감독이 있으며 모든 회의에 참관함. 또한 각 위원회의 이시간담회에도 참여함.

▶ **이시간담회란?**

각 정당의 이사 및 읍서버 등이 참석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각 정당의 참석자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최종적인 위원회 일정을 결정한다. 협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3) 회의록의 보존

서명·날인이 들어간 최종 회의록의 보존 주체는 자료과임.

(4) 원고 작성 시간

- 원고 작성 시간은 회의의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움. 단 올해부터 인트라넷을 통해서 회의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의사속보(미정고)를 제공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회의록 최종 완성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본회의록으로 그 이유는 참고자료나 부록 등 함께 실을 자료가 많기 때문임.

II 참고자료

1. 신회의록시스템(음성인식시스템)의 만족도 조사 결과

속기사와 일반직 기록부 직원을 대상으로 음성인식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작성 속도는 빨라졌다고 생각하는가?
 - 50%의 만족도.
- 원고 질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
 - 60%의 만족도.
- 원고 작성의 부담률은 낮아졌다고 생각하는가?
 - 60%의 만족도.

⇒ 원고 수정 면에서는 도입 전후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함

- 음성인식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점 : 음성인식시스템의 연수 후 누구나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 단점 : 시스템이 내놓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내 소란 시 음성인식시스템의 인식률 문제
 - 현재 남아 있는 속기사가 전부 퇴직한 후 음성인식시스

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인식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할 것인가의 문제

2. 기타용어 해설

용어	해설
중의원 사무국	의원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됨. 의원의 중역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사무총장하에 사무차장 및 조사국장을 두고 사무차장하에는 비서관, 의사부, 위원부, 기록부, 경무부, 서무부, 관리부, 국제부, 헌법기념관, 헌법심사회 사무국이, 조사국장하에는 조사국을 두게 됨. 직원 수는 약 1650명.
위원회	국회법에서 정한 상설 상임위원회는 예산, 조약, 법률안 등의 의안이나 청안 등을 전문적으로 상세히 심사하며 각각 소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행함. 특별위원회는 회기마다 필요할 때 설치됨. 현재 중의원에는 상임위 17개, 특별위 10개가 있음.
위원실	중의원의 각 위원회를 하는 장소. 질문자와 답변자 석이 있어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발언을 하나 잡음이 섞이기 쉬우며 마이크에서 떨어져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 등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음.
본회의	본회의는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 의원의 의사가 결정됨.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함.
본회의장	중의원의 본회의를 하는 장소. 원칙적으로 의장이 지명된 자가 연단에 올라 원고를 보고 연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녹음 상태는 매우 좋음.
중의원속기사양성소	중의원 속기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수학교. 여기서 중의원식의 수필속기를 습득하여 속기사 검정시험, 중의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중의원에 채용됨. 80여 년에 걸쳐 중의원의 속기사를 양성해 왔으나 2006년에 폐지. 참의원에 도 양성소가 있었으나 이곳도 폐지됨.
음성인식률	음성을 올바른 문자로 표시하는 정도
회의영상데이터	중의원에서는 본회의와 대부분의 회의를 인터넷 중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의 회의는 동영상 열람이 가능함.
회의록 정보 제공서비스	인쇄물의 회의록, 미정고인 의사속보(제공 범위는 중참 양원의원, 각 부 등 한정적), 중의원 홈페이지국립국회도서관에 공개되는 회의록 데이터가 있음.

